

2012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안내

[업데이트서식]

번호	서 식 명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3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5	최저한세조정계산서
6	특별비용조정명세서
7	비과세소득명세서
8	소득공제조정명세서
9	공제감면세액 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10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11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1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13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14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15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1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
17	가산세액계산서
18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19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20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1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
22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2)
23	수입배당금액명세서
24	기부금 조정명세서
25	기부금 명세서

번호	서 식 명
26	접대비조정명세서(갑)
27	접대비조정명세서(을)
2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30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31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32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33	국고보조금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34	합병과세특례 신청서
35	분할과세특례 신청서
36	자산조정계정명세서(갑)
37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38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39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40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41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42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43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44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4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6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47	소득공제신청서
48	기타 연결법인 관련서식등

[차 례]

1편 . 2012년 개정세법 해설 5

2편 . 법인결산

01. 수동결산-12월31일 일반전표입력	108
02. 자동결산-결산자료입력	112
03. 제조원가명세서	116
04. 손익계산서	116
0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16
06. 재무상태표	117
07. 결산부속명세서	118
08. 현금예금조정	118
09. 영수증수취명세서 및 송금명세서	120

3편 . 법인세조정

01. 법인세계산구조	123
02.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흐름	124
03. 결산조정과신고조정	125
04. 소득처분	126
05. 기초정보관리	128
06. 표준재무제표	130
07. 수입금액조정	132
08. 과목별세무조정	140
09. 감가상각조정	153
10. 소득및과표계산	159
11. 세액계산및신고서	164
12. 조특법상의 공제와 감면	172
13. 전자신고	179

1편. 2012년 개정세법 해설

I. 기업경쟁력 강화

0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

(법인세법 제55조)

가. 개정취지

○ 유망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재정건전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 중간세율 구간 신설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1	'12	2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이하	20%
	2억원 초과	22%	200억원 초과	2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2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42조의2)

가. 개정취지

-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으로 일시적인 평가차익이 발생함에 따른 세부담 증가 문제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재고자산 평가차익 과세이연 ○ 대상 － K-IFRS 도입*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예 :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등)으로 변경**한 기업 * K-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을 불인정 ** 회계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뿐만 아니라 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한 기업 ○ 방법 : 평가차익을 5년 분할 익금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2. 31.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11년 K-IFRS 도입기업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기한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연장

03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 ○ 원칙 : 매각거래** * 매출채권, 대출금 등 여러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 **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거래 (자산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완전히 이전)	○ (좌 동) ○ 예외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차입거래 인정 *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빌리는 거래(자산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그대로 보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4 장래손해조사비 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가. 개정취지

- K-IFRS에서 장래손해조사비에 대한 준비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준비금 적립시 손금으로 산입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손해조사비* 손금산입 ○ 지출시 당기비용처리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되는 금액	○ 장래손해조사비 준비금* 적립시 손금산입 * 장래 지출될 손해조사비에 대비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5 환변동보험의 외화환산손익 인식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가. 개정취지

- 헷지거래로 실질적인 소득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자산의 손익만 인식하여 과세되는 문제점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화환산손익 인식대상 파생상품 ☐ 통화선도*,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다른 통화 화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다른 표 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 기로 하는 계약	☐ 인식대상 파생상품 추가 ☐ (좌 동) ☐ 일반형 환변동보험* 추가 * 환율변동시 그 변동액 만큼 보험금을 지급(환수)하는 상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6 K-IFRS 도입 이전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가. 개정취지

- K-IFRS 도입 이전 발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을 허용하여 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 무형 자산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 (예 : 상표권, 방송권 등) <추 가> * 결산시에 수익·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익금·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	☐ 대상 추가 ☐ (좌 동) ☐ K-IFRS 최초 적용 이전에 발생한 영업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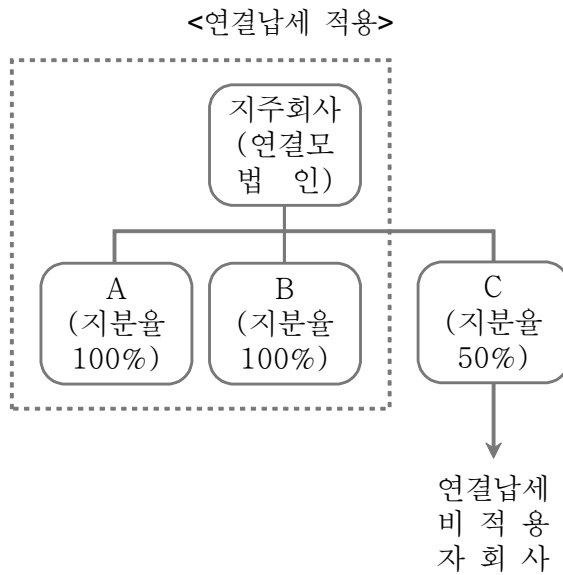
07 지주회사의 연결납세 적용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개선 (법인세법 제76조의14)

가. 개정취지

- 지주회사인 연결모법인이 연결되지 않은 자회사(지분율 100%미만)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30 ~ 50%)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주회사인 연결모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연결납세 적용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 : 100% 익금불산입 ☐ 연결납세 비적용 자회사(지분율 100%미만)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 일반법인 익금불산입률 적용	☐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 (좌 동) ☐ 일반법인 익금불산입률 →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일반법인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30% 이하	30%
30%초과 100%미만	50%
100%	100%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20%이상 40%이하	80%
40% 초과	10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2. 31.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8 해산한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

(법인세법 제76조의12)

가. 개정취지

- 연결법인간 흡수합병으로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결납세가 계속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자법인 해산시 ○ 해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연결납세방식 미적용	□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 또는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흡수합병되는 연결자법인 분부터 적용

09 연결납세방식 적용 대상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가. 개정취지

- 모법인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자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 방식 적용을 허용하여 조세의 중립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모법인 적용제외 대상 ○ 비영리내국법인 ○ 청산중인 법인 등 ○ 다른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	☐ 연결모법인 적용 허용범위 확대 ○ 비영리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모법인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법인세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가. 개정취지

- 「상법」에서 삼각합병*을 도입함에 따라 「법인세법」에서도 합병과세특례대상에 삼각합병을 도입

* 자회사가 합병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합병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시 양도차익 등의 과세이연 요건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대가 중 합병법인 주식을 80% 이상 배정	□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완전모법인 주식을 80% 이상 배정하는 경우도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4. 15.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11 자본거래시 과세제도 보완

(법인세법 제18조)

가. 개정취지

○ 개정 「상법」에서 자본준비금 배당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제도를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을 배당에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 자본준비금의 배당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4. 15. 이후 최초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12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법인세법 제17조·제76조)

가. 개정취지

- 개정 「상법」에서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좌 동) - 단,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을 초과하여 계상하는 금액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	☐ (좌 동) - 단,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 발행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4. 15.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무액면주식부터 적용

13 의제배당 과세대상 확대

(법인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가. 개정취지

-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등의 잉여금이 합병 시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자본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 배당을 한 경우 잉여금 성격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 자본전입시 과세되는 잉여금 - 이익잉여금, 토지의 재평가 차액(1%) 등 ○ 자본전입시 면세되는 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합병차익 등	○ 과세되는 잉여금의 대상 추가 - 적격합병(적격분할)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잉여금 중 과세된 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 (㉠, ㉡중 과세된 것, ㉢)은 의제배당 과세 <table border="1"> <thead> <tr> <th>합병차익 구성순서</th><th>의제배당 과세여부</th></tr> </thead> <tbody> <tr> <td>㉠ 자산조정계정</td><td>○(과세)</td></tr> <tr> <td>㉡ 합병감자차익</td><td>×</td></tr> <tr> <td>㉢ 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td><td>×(과세되지 않은 것) ○(과세)</td></tr> <tr> <td>㉣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td><td>○(과세)</td></tr> </tbody> </table> - 상기 잉여금을 자본전입시 ㉠, ㉡, ㉢, ㉣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입한 것으로 봄	합병차익 구성순서	의제배당 과세여부	㉠ 자산조정계정	○(과세)	㉡ 합병감자차익	×	㉢ 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	×(과세되지 않은 것) ○(과세)	㉣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과세)
합병차익 구성순서	의제배당 과세여부										
㉠ 자산조정계정	○(과세)										
㉡ 합병감자차익	×										
㉢ 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	×(과세되지 않은 것) ○(과세)										
㉣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자본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14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특례 적용 (법인세법 제44조)

가. 개정취지

-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완전모법인*이 자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 자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는 법인 ☐ 별도의 요건*없이 합병과세특례를 적용 * 요건 : ① 사업목적의 합병 ② 지분의 연속성 ③ 사업의 계속성	☐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15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

(법인세법 제45조·제46조의4)

가. 개정취지

- 자산처분손실이 예상되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합병법인으로 이용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의 처분손실(합병후 5년 이내 발생)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공제 불가 * 적격분할, 자산의 포괄적양도 포함 <신 설>	○ 합병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후 5년 이내 발생)도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에서 공제 불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합병·분할합병 하는 분부터 적용

16 합병·분할 과세특례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제82조의2제3항)

가. 개정취지

- 포함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분의 연속성 충족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문제점 보완
- ※ 포함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합병대가 지급 후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과세특례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은 합병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으로 하되 ○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함주식)이 있는 경우 동 포함주식의 취득가액을 금전으로 합병대가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대가에 가산 <산식> $\frac{\text{합병대가 중 주식가액}}{\text{합병대가} + \text{포함주식취득가액}}$	□ 합병과세특례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시 포함주식에 대한 계산방법 조정 ○ 포함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합병대가를 교부한 것으로 봄 ○ 2년 이내 취득한 포함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하더라도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 <산식> ① 포함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한 경우 $\frac{\text{합병대가 중} - \text{2년 이내 취득한 주식가액}}{\text{포함주식가액}^*}$ 합병대가 *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20%를 초과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

종 전	개 정
☐ 분할 : 합병과 동일한 기준 적용	* 포함주식가액은 포함주식에 대한 합병대가 추산액 ② 포함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frac{\text{합병대가 중 주식가액} + \text{포함 주식가액} - \text{2년 이내 취득한 포함 주식가액}}{\text{합병대가} + \text{포함주식가액}}$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합병요건 계산 사례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 150 지급
– 피합병법인 주주(합병법인 제외) : 100 지급
– 합병법인(포함주식 보유) : 50 지급
* 합병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주식 30, 2년 이전에 취득한 주식 20

가. 포함주식에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종 전	개 정 후
$\frac{\text{주식 150}}{\text{합병대가 150} + \text{포함주식 30}} = 83\%$ (적격)	$\frac{\text{주식 150} - \text{2년 이내 포함주식 30}}{\text{합병대가 150}} = 80\%$ (적격)

나. 포함주식에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종 전	개 정 후
$\frac{\text{주식 100}}{\text{합병대가 100} + \text{포함주식 30}} = 77\%$ (비적격)	$\frac{\text{주식 100} + \text{교부간주 50} - \text{2년 이내 포함주식 30}}{\text{합병대가 100} + \text{교부간주 50}} = 80\%$ (적격)

17 합병·분할 과세특례 요건 중 주식배정 요건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4항·제82조의2제4항)

가. 개정취지

- 지배주주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 교부여부에 따라 합병과세특례요건 충족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 보완

* 재법인-351(2011. 4. 22.)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2010. 12. 30. 개정전의 것) 산식에서 “지배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같은 조 지배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과세특례 요건으로 지분의 연속성 요건으로 지배주주에게는 그 지분을 이상의 주식을 교부하여야 함 $\text{합병주식 총액} \times \frac{\text{지배주주의 지분합계}^*}{\text{피합병법인의 전체지분}^*}$ *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 지분 제외(재법인-351, '11. 4. 22.)	☐ 지분의 연속성 판단 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지배주주 배정요건 판단 ☐ (좌 동)
☐ 분할 : 합병과 동일한 기준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8 합병·분할 사후관리 요건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80조의4·제82조의2·제82조의4)

가. 개정취지

- 일부 지배주주가 임의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여 합병법인의 과세이연이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합병·분할로 과세이연을 적용받기 위한 지배주주*의 주식보유 요건 ○ 모든 개별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1/2 이상 보유 * 지분율 1% 이상인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신 설> ☐ 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 특례의 사후관리 기간 ○ 합병·분할등기일 및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 지배주주의 주식보유 요건 완화 ○ 지배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1/2 이상 보유 - 지배주주간 주식처분시 지배주주가 교부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봄 ☐ 합병후 지배주주 보유 주식의 처분 순서 ○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봄 ☐ 사후관리 기간 완화 ○ 3년 → 2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주식보유요건 및 주식처분 순서 : 2012. 2. 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사후관리기간 : 2012. 1. 1. 이후 최초로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9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개선

(법인세법 제47조·제47조의2)

가. 개정취지

- 분할 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주식과 승계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각각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과세 ○ 분할법인 : 분할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하되 주식처분시 이연된 양도차익을 과세 ○ 분할신설법인 :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자산 처분시 양도차익을 과세	□ 분할법인만 과세 ○ 분할법인의 주식 처분시와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시 처분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분할법인에 과세 * 주식을 50% 이상 처분시 전액 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2. 31.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물적분할·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
- 2011. 12. 31. 전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012. 1. 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물적분할 과세체계

구 분	기 준			개 정		
	장부가액	분할당시시가	양도당시시가	장부가액	분할당시시가	양도당시시가
분할법인	압축기장충당금 ←————→ 주식처분시 과세			압축기장충당금 ←————→ 주식·자산처분시 과세		
분할 신설법인	자산조정계정 계상 ←————→ 자산처분시 과세			자산처분시 과세		

20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방법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84조의2)

가. 개정취지

- 분할신설법인의 처분자산 범위를 사업의 계속성과 관련되는 감가상각대상 자산과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토지 및 주식·출자지분으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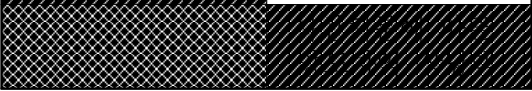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분할신설법인이 자산 처분시 분할법인의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① 감가상각자산* ② 토지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건물 등 유형자산 및 특허권 등 무형자산(유휴설비 포함) ☐ 분할법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 ○ 전기말 압축기장충당금(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 잔액 × [당기 주식처분 비율(A) + 당기 자산처분 비율(B) - A × B] － 당기 주식처분 비율(A) : 당기에 처분한 주식등의 장부가액 / 전기말 주식등의 장부가액 － 당기 자산처분 비율(B) : 당기에 처분한 자산의 양도차익 / 전기말 자산의 양도차익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 양도차익 계산 도해

주식		
처분		
비율		
		주식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상당액
		+ 자산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상당액
		액
	자산처분비율	<u>- 중복되는 양도차익 상당액</u>
		과세하는 양도차익

21 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주식의 가액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라 분할법인·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과세특례 적용시 : 장부가액 ○ 그밖의 경우 : 주식의 시가	□ 주식의 취득가액 ○ 물적분할·100% 지분을 취득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 과세특례 적용시 : 장부가액 - 그밖의 경우 : 양도한 순자산의 시가 ○ 기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 과세특례 적용시 : 장부가액 - 그밖의 경우 : 주식의 시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II. 기부금·비영리법인 세제 개선

22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법인세법 제24조)

가. 개정취지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기간 ☐ 지정기부금 : 5년 ☐ 법정기부금 : 1년	☐ (좌 동) ☐ 연장 : 1년 → 3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23 법정기부금단체에 공공교육기관 추가

(법인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가. 개정취지

- 공공교육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 단체인 공공교육기관 ☐ 사립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추 가>	☐ 법정기부금* 단체 추가 * 개인 : 소득금액의 100% 한도내 소득공제 법인 : 소득금액의 50% 한도내 소득공제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KDI정책대학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한국학대학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24 비영리 교육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법인세법 제24조)

가. 개정취지

- 교육·연구·장학 사업을 위한 재원확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아래 단체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원격대학 등 ○ 사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 - 학교의 신축·증설, 교육환경 개선 목적	○ (좌 동) ○ 국립·공립·사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 -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지급 목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25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가. 개정취지

○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인정 ○ 다만, 다음 시설은 제외 ①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 전부 부담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 전부 부담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의 이용 대가 전부 부담 시설	☐ 무료이용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및 노인교실)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6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조정 (법인세법 제29조)

가. 개정취지

-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소득 * 소득금액의 일정한도 내에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5년내 고유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미사용시 법인세 추정) ○ 50% 설정 이자 및 배당소득 - 비영업대금이익, 포괄적 이자소득 - 의제, 인정, 외국법인 간주, 출자공동사업자 및 포괄적 배당소득 ○ 100% 설정 이자 및 배당소득 - 위 50% 설정 이자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 소득	○ 비영업대금이익만 50% 설정 수익사업 소득으로 유지 ○ 비영업대금이익을 제외한 50% 설정 대상 이자·배당소득을 100%로 전환 - 포괄적 이자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 및 포괄적 배당소득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7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36조의2)

가. 개정취지

- 기부금 단체의 공익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지정기부금단체>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요건 ○ 수입을 공익목적에 사용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 ○ 개설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정치활동 불가 ○ 지정취소후 5년 경과 등 <신 설>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취소 요건 ○ 1,000만원 이상 상속세 또는 증여세 추징 ○ 공익목적 위반, 지정요건 위반, 이행실적 미제출	☐ 지정요건 및 의무이행 사항 추가 ○ 연간 지출액(수익사업 관련 지출 제외)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종 전	개 정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공개 <신 설> <법정기부금 지정단체> ☐ 학교 등 법정기부금 지정단체의무 이행 사항 ○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 지정취소후 5년 경과 등 <신 설> ☐ 학교 등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요건 ○ 1,000만원 이상 상증세 추정 ○ 공익목적 위반, 지정요건 위반, 의무이행 위반, 요건충족 여부 미보고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공개 <신 설>	○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징역 또는 벌금형이 최종 확정된 경우 ☐ 의무이행 사항 추가 ○ 공공기관 등과 한국학교의 경우 연간 지출액(수익사업 관련 지출 제외)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 지정취소 요건 추가 ○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징역 또는 벌금형이 최종 확정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익목적지출 : 2012. 2. 2. 이후 최초로 지정.재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취소요건 : 2012. 2. 2. 이후 최초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

28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가. 개정취지

- 비영리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것으로 간주	□ 과다인건비는 비영리법인의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계산시 고유목적 지출로 보지 않음 ○ 과다인건비의 개념 - 임직원의 급여 중 연간 8천만원* 초 과금액 - 다만, 인건비 지급기준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유목적지출로 인정 * 공공기관 임원의 평균인건비 ○ 대상법인 - 장학법인, 사회복지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9 전공대학 경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 개정취지

- 전공대학은 전문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과 동일한 고등교육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전문대학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 경영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경영사업 <추 가>	☐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Ⅲ. 재정건전성 제고 및 세원관리 강화

30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강화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가. 개정취지

- 계산서 교부질서 정상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 계산서 미발급 또는 부실기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 기재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1%	○ 가산세 대상 추가 - 가공 및 위장 계산서 수수 ○ 가산세율 인상 - 계산서 미발급, 가공 및 위장 수수 : 공급가액의 2% - 그 외 : 공급가액의 1% * 단,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와 중복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발급하지 아니한 계산서 또는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 분부터 적용

31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부과기한 폐지

(법인세법 제76조제8항)

가. 개정취지

- 다른 세법 규정과 일치시켜 가산세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2%) 부과 한 ☐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 부과기한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2 주주등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기준 개선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제1항, 제5항·제152조제2항·제161조제6항)

가. 개정취지

- 실제 소유자에 대한 정보 제출의무를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 □ 가산세 부과대상을 불분명하게 작성한 경우 ○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주주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 ○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기업의 주식등의 실제소유자 확인부담 완화를 위해 - 기업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주주등명세서 : 2012. 1. 1. 이후 최초로 설립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3 청산소득금액 계산관련 규정 개선

(법인세법 제79조)

가. 개정취지

- 잉여금을 편법으로 축소시켜 과세대상 청산소득을 줄이는 형태의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청산소득금액 : 잔여재산가액 (①) - 자기자본(②) ① 잔여재산가액 : 자산 - 부채 ② 자기자본 : 자본금 + (잉여금 - 이월결손금*) + 법인세환급액 * 잉여금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	○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 자본 전입한 금액을 잉여금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해산하는 법인부터 적용

3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

(법인세법 제120조)

가.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원천징수 대상 이자·배당소득 ○ 제출의무 제외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배당소득 - 법인세 비과세·면제 소득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 ○ 제출의무 제외 -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

IV. 기타 제도보완

35 소액광고선전비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가. 개정취지

-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액 광고선전비* 손비인정 특례 * 불특정다수인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손비 인정(특정인 대상 접대비) ○ (한도) 1인당 연간 3만원 이내 - 다만, 5,000원 이하 물품 제공시 한도 계산에서 제외	☐ 소액 광고선전비 범위 확대 - (한도 제외) 5,000원 이하 물품 → 10,000원 이하 물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6 파생상품 거래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접대비 지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 거래로 인하여 접대비 한도가 증가되지 않도록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파생상품 거래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 파생상품 · 파생결합증권 거래 : 개별 거래의 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봄 * 접대비 한도 계산식 1,200만원(중소기업 : 1,800만원) + [수입금액 × 적용률]	○ 파생상품 · 파생결합증권 거래 : 모든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봄 * 다만, 순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0으로 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7 개발완료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가. 개정취지

- 개발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를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련 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개발이 취소된 경우 ○ 해당 개발비는 손실로서 손금에 해당하나 손금산입시기 불명확	□ 개발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 시기 명시 ○ 개발을 취소하고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손금산입 (i) 개발비의 자산성 상실* * 해당 개발비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제품 또는 용역의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ii) 개발비를 결산상 전액 손실로 계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8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식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가. 개정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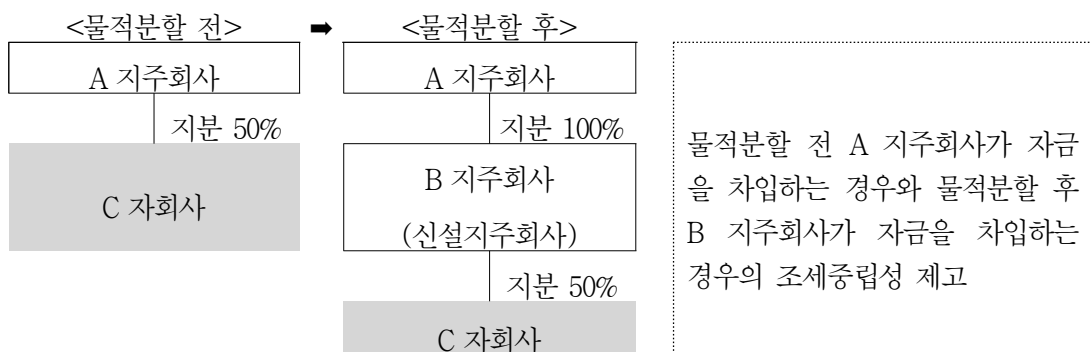
- 지주회사가 물적분할로 다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산이 시가로 승계됨에 따라 신설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감소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주식취득과 관련 있는 차입금의 이자는 차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text{수입배당금} \times \text{익금불산입률}$ $= \frac{\text{차입금} \times \text{익금불산입률}}{\text{이자}}$ 세무상 주식장부가액 회계상 자산총액	□ 지주회사(A)가 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다른 지주회사(B)를 설립하는 경우 ○ 신설지주회사(B)가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 차입금 이자 차감 계산식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에 ‘물적분할 전 지주회사(A)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을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39 용역의 손익귀속시기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여 기업의 세무조정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용역의 수익인식 ○ 원칙 : 진행기준 ○ 예외 : 인도기준 허용 -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중소기업의 1년 미만 용역 <추 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경우 (예 : 예약매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0 당좌대출이자율 인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예금은행 가중평균 당좌대출금리가 6.9%('10년말) 낮아진 점을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당좌대출이자율 ○ 8.5% ('09. 3. 30.~)	☐ 당좌대출이자율 ○ 6.9%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1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 경감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

가. 개정취지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추징시 이자상당액 ○ 환급취소세액 × 추징기간 일수 × 1일 3/10,000(연 10.95%) <신 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 상당액 경감 ○ (좌 동)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4.0%)을 적용 * 과세관청의 부당한 과세에 따라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았으나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환급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42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가. 개정취지

-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마련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 일시퇴직기준 $\times 25\%$ * * 매년 5%씩 인하('16년 폐지)	○ Max [일시퇴직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 $\times 20\%$ * * 매년 5%씩 인하('16년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3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서류 수취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가. 개정취지

- 농·어민 지원 및 법인이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손금산입 허용 ☐ 특정 국외지역 지출 <추 가>	☐ 대상 추가 ☐ (좌 동) ☐ “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 구입시” - 금융기관 송금만 인정하고 송금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4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가. 개정취지

-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 포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법인 ○ 조합법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 주주등이 공공기관 또는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 사모투자전문회사* * 경영권 참여, 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해 주식등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9)	<삭제> (제출대상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5 산학협력단에 대한 중간예납신고 면제 (법인세법 제63조)

가. 개정취지

- 산학협력 사업 지원 및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중간예납 ○ 사업연도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 직전사업연도 6개월 법인세액을 해당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8월내 납부 ○ 중간예납의무 면제 - 사립대학법인	□ 중간예납 면제 대상 추가 ○ 중간예납의무 면제 - 사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6 청산소득 중간신고제도 보완

(법인세법 제85조)

가. 개정취지

-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대부분의 소득을 배당하여 신고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청산소득 중간신고 사유 ① 잔여재산가액이 확정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 ②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청산소득 중간신고 면제 ○ ②의 사유 발생시 면제 : 국가가 지분의 1/2이상을 소유하는 법인	☐ (좌 동) ☐ 면제 대상 추가 ○ (좌 동) ○ ①, ②의 사유 발생시 면제 :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 일정 요건을 갖춘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그 배당금을 소득공제함으로써 그 배당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제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2012. 1. 1. 현재 중간신고기한이 끝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분야)

0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가. 개정취지

-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투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 세액공제율 조정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임시투자	4%	5%	5%	기본공제 ¹⁾ (고용유지조건)	3%	4%	4%
고용창출	1%	1%	1%	추가공제 ²⁾ (고용증가비례)	2%	2%	3%
합 계	5%	6%	6%	합 계	5%	6%	7%
○ 일몰 : 2011. 12. 31.				1) 전년대비 고용인원 유지기업에 대해 3%~4%의 공제율 보장			
				2)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			
				○ 일몰 : 2014. 12. 31. (3년 연장)			
				※ 임투공제는 일몰 종료			

02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등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한도 확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가. 개정취지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체의 현장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창출세액공제한도(①+②) <신 설> ① 청년(15~29세) 고용인원 $\times$ 1,500만원 ② (해당연도 근로자수 - 직전연도 근로자수 - 청년근로자 고용인원) $\times$ 1,000만원	☐ 추가공제한도 확대(①+②+③) 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졸업생* 고용인원 $\times$ 2,000만원 * 고등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학교(산업정보학교 등) ② 청년(15~29세) 고용인원 $\times$ 1,500만원 ③ (해당연도 근로자수 - 직전연도 근로자수 - 청년·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고용인원) $\times$ 1,0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0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위임사항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6의2조)

가. 개정취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법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고용여부 판단시 해당 학교를 졸업한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제26조)

○ 추가공제(투자금액의 2%~3%) 한도 적용시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훈련 학교 졸업생 1인당 2천만원으로 계산

⇒ 마이스터고 등의 범위, 청년근로자·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 계산방법 등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훈련 학교의 범위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 특성화고등학교 ☐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예 : 산업정보 학교)

종 전	개 정
<신 설> ☐ 청년근로자 수 계산방법 ○ 근로계약일 현재 만15~29세 이하인 근로자 수 － 한도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의 계산 ○ 근로계약일 현재 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수 － 한도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청년근로자 수 계산방법 ○ (좌 동) － 한도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서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를 뺀 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04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가. 개정취지

-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 (좌 동)
☐ (근로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	☐ (좌 동)
○ 적용기한 : 2011. 12. 31.	○ 적용기한 : 2012. 12. 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05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가. 개정취지

-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고용에 따라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 다만, 청년고용을 우대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지원대상 ○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세액공제액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i) 청년(15~29세)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100%) $\frac{\text{해당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text{해당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times \textcircled{a} \text{ MIN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①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계산 (ii) 청년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50%) $\frac{\text{해당 과세연도 청년 외 상시근로자 사회보험료}}{\text{해당 과세연도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 \times (\text{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textcircled{a}) \times 50\%$ ○ 적용기한 : 2012. 1월 ~ 2013. 12월(2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6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수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가. 개정취지

- 청년 근로자와 청년 외 근로자를 구분하여 세액공제액에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수 계산방법

- ◇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순증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추가부담액을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 청년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100%
-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
- ⇒ 상시근로자 범위 및 근로자수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시근로자의 범위 다음의 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포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기업의 최대주주(개인은 대표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현행과 같음)

종 전	개 정
<신 설> ☐ 상시근로자수 계산 ○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 해당 과세연도 월수 <신 설> <신 설>	☐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 상시근로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 다만,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적용 연령을 최대 35세까지 확대 ☐ (좌 동) ☐ 청년 상시근로자수 계산 ○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 수 합계 ÷ 해당 과세연도 월수 ☐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계산 ○ 상시근로자수 - 청년 상시근로자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7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가. 개정취지

- 기존근로자의 고용감소가 없는 범위에서 청년고용을 우대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므로,
 - 청년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은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과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중 작은 값으로 하고,
 -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은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서 청년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을 제외하여 계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청년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 MIN(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계산 ☐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 '0' 보다 작은 경우는 '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8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 상당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가. 개정취지

-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1인당 평균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1명당 실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청년 상시근로자 $\frac{\text{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text{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times \text{사회보험료율}$ ○ 청년 외 상시근로자 $\frac{\text{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text{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text{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times \text{사회보험료율}$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사회보험료율을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9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4항)

가. 개정취지

-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및 복지 증진
 - 고열 작업장 등 특수 작업 환경 근로자의 업무효율 향상 및 복지증진을 통한 기업생산성 향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7%) 대상 ○ 무주택 종업원 임대국민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 시설 (1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시설 ○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	☐ 공제대상 확대 (좌 동) ○ 종업원용 샤워시설, 목욕시설 추가 ☐ 공제대상 명확화 ○ 종업원을 위한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 시설, 목욕시설로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0 기업이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해 인력개발비 수준으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가. 개정취지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졸업생의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의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과 사전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이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산업정보학교 등 고등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학교(시행령 개정사항) ** 산업체맞춤형·취업인턴직업교육훈련계약 등(시행령 개정사항) ○ 공제율 :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준용 * 대기업 3~6%, 중소기업 25% (당기분 기준) ○ 일몰 : 2013. 12. 31. *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현행 조특법 §104의18)에 대해서도 일몰(2013. 12. 31.) 설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세액공제 관련 위임사항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

가. 개정취지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졸업생의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
 - ‘취업계약 입학제도’, ‘취업인턴제’ 참여기업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인력난 해소 도모

◇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제104조의18)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이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R&D 세액공제 수준의 혜택 부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사전취업계약 등의 범위 ○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 또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 ☐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범위 ○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2 R&D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가. 개정취지

- 현행 과학기술분야 중심의 R&D 세액공제를 서비스분야로 확대하여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단,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자체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의 정의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 R&D 정의에 서비스 R&D 추가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 등의 범위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과학기술분야에 한정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 등의 범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11개 업종) 포함
☐ 연구개발비의 범위 ○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신 설>	☐ 서비스분야 연구개발비 범위 신설 ○ (좌 동) - 단, 서비스분야 연구개발비는 자체 연구개발비로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3 R&D 세액공제 대상에 위탁·재위탁 R&D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2항, 별표 6)

가. 개정취지

- 최근 기술융합 추세에 따라 하나의 기업이 모든 R&D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위탁받은 R&D 용역 일부를 재위탁하는 현실을 감안
 - 다만, 위탁·재위탁·공동연구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을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수탁 기업 등의 경우에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 유형별 세액공제 대상			□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구 분	일반R&D	신성장·원천기술 R&D	구 분	일반R&D	신성장·원천기술 R&D
자체연구개발	○	○	자체연구개발	○	○
위탁 R&D	○	×	위탁 R&D*	○	○
재위탁 R&D	×	×	재위탁 R&D	○	○
공동연구개발	○	×	공동연구개발	○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의 경우 수탁·재수탁·공동연구하는 기업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4 R&D 세액공제시 증가분 방식 적용대상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가. 개정취지

- 과거 4년간 지출한 R&D 비용이 없는 경우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규·심판례 등과 대법원 판례가 상이한 문제점 해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반 R&D 세액공제 방식 ☐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 * 증가분 방식 : 과거 4년간 발생한 R&D 비용의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의 40% (중소기업 50%) ☐ 당기분 방식 : 3~6%(중소기업 25%)	☐ 일반 R&D 세액공제 방식 ☐ (좌 동) - 단, 과거 4년간 발생한 R&D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당기분 방식만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5 증가분 방식 R&D 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가. 개정취지

- 현행 증가분 방식의 R&D 세액공제 계산방법은 R&D 비용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해당 과세연도까지 기간이 48개월(4년) 이상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 해소

※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비교

연도별 R&D 비용					4년 평균 R&D 비용	
Y-5년	Y-4년	Y-3년	Y-2년	Y-1년	현 행	개 정 안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8,000/4	2,000 = 8,000/4
2,000	0	0	2,000	2,000	1,000 = 4,000/4	2,000 = 4,000/2
0	0	0	2,000	2,000	2,000 = (4,000 ÷ 2 × 4) / 4	2,000 = 4,000/2
0	0	2,000	0	2,000	1,333 = (4,000 ÷ 3 × 4) / 4	2,000 = 4,000/2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가분 방식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연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 최초로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해당 과세연도까지 4년 이상인 경우 : 직전 4년 R&D비용 합계액/4 ☐ 최초로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해당 과세연도까지 4년 미만인 경우 : 4년으로 환산한 금액	☐ 증가분 방식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연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합리화 ☐ 직전 4년 R&D 비용 합계액 ÷ 직전 4년 중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 수* 합계 * 단, 과세연도의 수가 4이상인 경우 4로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6 위탁·공동연구 기관의 범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가. 개정취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의 범위를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되, 서비스 R&D의 경우 자체연구개발에 대해서만 R&D세액공제를 허용
- 한국디자인진흥원을 R&D 수탁기관에서 제외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경우 개별 기업으로부터 R&D 또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수탁 받는 경우, 동 규정이 없어도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별표 6 제1호사목)에 해당하여 R&D 세액공제 가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 비용의 범위 ○ 아래 기관과의 위탁·공동연구 비용 ① 대학·전문대학, 연구기관 * 연구분야의 제한 없음 ②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 비영리법인,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전담부서 ③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학협력단 등 ④ 한국디자인진흥원	☐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 비용의 범위 조정 ○ 아래 기관과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위탁·재위탁·공동연구 비용 ① ~ ③ (좌 동) ※ 서비스분야 R&D는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에만 세액공제 허용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7 R&D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가. 개정취지

- 「조세특례제한법」 통칙에 규정된 인건비 범위를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
- 과학도서·간행물,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는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개발비의 범위 ○ 자체연구개발비 - 인건비 - 견본품, 원재료비 등 ○ 위탁·공동연구개발비 ○ 소화개발비, 기술지도비용 등 ○ 과학기술 도서·간행물 구입비 ☐ 인력개발비의 범위 ○ 대학·연구기관·직업훈련기관 등에서의 위탁교육훈련비 ○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 ○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 연구개발비의 범위 조정 ○ 자체연구개발비 - 인건비(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 제외) - (좌 동) ○ (좌 동) ○ (좌 동) <삭 제> ☐ 인력개발비의 범위 조정 ○ (좌 동) ○ (좌 동)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8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대상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가. 개정취지

- 에너지 절감,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은 연장하되, 기존 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범용화된 시설 등은 제외하고, 에너지 절약 효과를 고려하여 대상시설 재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일몰 : 2011. 12. 31. ○ 공제대상 - 에너지절약형 시설 - 중질유 재처리시설 - 절수설비·기기 -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일몰 : 2013. 12. 31. (2년 연장) ○ 공제대상 조정 - 에너지절약형 시설 조정* * (제외)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 건조기, 탈수기 등 22개, * (추가) 고효율 변압기, 고속 터보 블로어 등 18개 <삭 제>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일몰연장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중질유 재처리 시설 : 2012. 2. 2.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에너지 절약형 시설 : 2012. 2. 28.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9 제3자 물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 제104조의14)

가. 개정취지

- 제3자 물류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 : ① 또는 ② ① 직전 과세연도 대비 제3자물류비용 증가분 － (조건) 각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 비중이 50% 이상 ② 해당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 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 공제율 : 3% <신 설>	☐ 세액공제대상 확대 ○ 공제대상 : ① 또는 ② ① (좌 동) － (조건) 각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 비중이 30% 이상 ② 해당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 공제율 : (좌 동) ☐ 1년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이 자가물류 시설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사후관리 : 시설양도후 3년간 제3자물류비용이 70% 이상일 것 ○ 적용기한 : 2013. 12. 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0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판정기준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계산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제외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

(사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99명인 중소기업(수도권 밖, 제조업)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만들어 5명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 (현행) 중소기업(104명)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5% 적용

- (개정) 소기업(99명)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0% 적용

⇒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만들어 연구전담요원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세제지원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도 개정('11. 12. 28.)을 통해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제외하는 근로자 ☐ 주주인 임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 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신 설>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제외하는 근로자 (좌 동) ☐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8.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1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문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제1항)

가. 개정취지

○ 연구소기업 설립에 관한 근거법률*이 개정(2009. 12. 30.)됨에 따라 조문정리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구개발특구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 감면 ○ 대상기업 - 첨단기술기업(지경부장관 지정) - 연구소기업(승인제) ○ 지원내용 :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 감면업종 : 생명공학 관련 업종 등 ○ 일몰 : 2012. 12. 31.	- 연구소기업(등록제) * 승인제 → 등록제로 관련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조문정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2

R&D 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16조의14)

가. 개정취지

- 2009. 8. 18.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시 부칙(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산업’이 제외됨
 -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개정 이전에는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였으나, 타법 개정으로 제외되었으므로 세액감면대상에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액감면 대상업종 ○ R&D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중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한해 세액감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	☐ 세액감면 대상업종 (좌 동) - 정보통신산업 범위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3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일몰 연장 및 지원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61조)

가. 개정취지

○ 수도권과밀을 억제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60) * 수도권과밀억제권·광역시 → 수도권과밀억제권外·광역시外 ○ 공장 양도차익의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 ○ 일몰기한 : 2011. 12. 31.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61)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본점·주사무소 대지·건물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 ○ 과세이연금액 :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감면대상비율 $\left(\frac{\text{지역이전에 소요된 금액}^*}{\text{본점 등의 양도가액}} \right)$ *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소재 법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액 또는 임차보증금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본점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액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본점의 이전비용 ○ 일몰기한 : 2011. 12. 31.	□ 과세특례대상 조정 및 일몰 연장 ○ 광역시* →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 일몰기한 : 2014. 12. 31. ○ 일몰 연장 : 2014. 12. 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24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 업종 기준에 대한 법령 위임 규정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3항·제63조제5항·제63조의2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

가. 개정취지

- 공장을 지방이전시 영위하는 업종의 분류기준에 대한 법령 위임 규정을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조세특례 유형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 특례(조특법 §60) ○ 수도권과밀내의 중소기업 공장을 수도권 과밀 밖으로 이전시 7~10년간 감면(조특법 §63) ○ 수도권과밀내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7~10년간 감면(조특법 §63의 2)	(현행과 같음)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업종 기준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하여야 함(조특령 §54②) ⇒ (문제점) 법의 위임없이 시행령에 곧바로 규정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업종 기준 ○ 법에 위임규정을 명확히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5 지방이전법인의 법인세 등 감면대상 제외업종 중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가. 개정취지

- 지방이전 법인의 제외 업종인 소비성 서비스업 범위를 명확히 시행령에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방이전법인이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그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 조특령 §29③의 소비성서비스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6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가. 개정취지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시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5년거치 5년분할 과세) ○ 적용기한 : 2015. 12. 31.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지원대상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 지원내용 : 법인세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 적용기한 : 2015. 12. 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양도차익 법인세 : 2012. 1. 1. 이후 최초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 감면 : 2012. 1. 1. 이후 최초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27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위임사항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

가. 개정취지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은 공공기관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지방이전 세제지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규정 신설

- ◇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건축물·부지)을 2015. 12. 31. 까지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조특법 제62조)
-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2015. 12. 31. 까지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조특법 제62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 ① (양도차익 계산방법) 조특령 §57④~⑥* 준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 등 양도가액

종 전	개 정
<신 설>	② (사후관리 요건) 조특령 §57⑦~⑩* 준용 * 다음 요건 위반시 익금불산입된 금액 익금산입 ⑦ 이전일로부터 2년내 양도, 양도일로부터 3년내 이전 ⑧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무소 본사 업무 인원 < 본사업무인원의 50% ⑨ 양도대금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 취득(또는 임차)하거나 1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 ⑩ 익금산입액 계산방법 ③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 제출방법) 영 §57⑪ 준용* * 법인세 신고시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보고서(또는 이전계획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규정 ☐ 고정자산처분익 · 유가증권처분익 · 수입이자 · 수입배당금 · 자산수증익 ☐ 사후추징 요건의 규정 ☐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이전 후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 ☐ 급여와 임원의 범위 및 사후추징금액 납부방법 등 규정 ☐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급여와 소득 ☐ 임원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추징금액 납부방법 : 사후추징 요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5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조특령 §58①~③ : 201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령 §58④~⑦ : 2012. 1. 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

28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 ·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가. 개정취지

- 지방이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중장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일몰을 3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 · 법인세 세액감면 ○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 → 수도권과밀억제권 外 ○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10년간(7년간 100%, 3년간 50%), 그 외 지역으로 이전시 7년간(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일몰기한 : 2011. 12. 31.	○ 일몰연장 : 2014. 12. 31. (3년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9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4항제2호, 제4호)

가. 개정취지

- 지방이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중장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일몰을 3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 법인 공장·본사의 지방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 → 수도권 외 ○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10년간(7년간 100%, 3년간 50%), 그 외 지역으로 이전시 7년간(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일몰기한 ; 2011. 12. 31.	○ 일몰연장 : 2014. 12. 31. (3년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0 지방이전법인의 감면대상소득금액 계산시 급여총액 적용 방법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나목)

가. 개정취지

- 지방이전법인이 감면대상소득을 계산시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을 근로제공기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급여 지급일로 잘못 적용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화

* 예 : 근로 제공기간 5.1. ~ 5.31, 급여 지급일 6.5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본사 지방 이전시 세액감면 ○ 감면내용 – 법인세 등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감면대상소득 : ① × Min(②, ③) ① 당해연도 과세표준 ②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 / 법인 전체인원 급여총액 ③ 이전 후 본사 근무인원 / 법인 전체 근무인원	○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 / 법인 전체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1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업종 기준에 대한 규정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 제60조제6항 · 제60조의2제16항)

가. 개정취지

- 공장의 지방이전시 영위 업종의 기준에 대한 위임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설*됨에 따라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일괄 규정하였던 영위업종 기준을 위임조문별로 각각 규정

※ 조특법 §60③, §63⑤, §63의2⑩ 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업종 기준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하여야 함 ○ 시행령 §54②에 일괄 규정	(현행과 같음) ○ 조특법상 위임 조문별로 각각* 규정 * 조특법 §60 → 조특령 §54② 조특법 §63 → 조특령 §60⑥ 조특법 §63의2 → 조특령 §60의2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2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가. 개정취지

- 수도권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와 건물 양도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 적용기한 : 2011. 12. 31.	○ 기한연장 : 2014. 12. 31. (3년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3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7,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가. 개정취지

- 의료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지원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시 감면대상기업을 구체화하고, 여타 특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세제지원 기준 신설
 - 투자금액, 고용유지 등을 지원기준으로 두고 있는 여타 특구(연구개발특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기준 설정
 - 지역특구 세제지원시 총지원한도·고용인센티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투자 누계액의 범위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제지원 ○ 지원대상 : 2013년 말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보건의료 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

3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측면에서 일몰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업종) - 제조업,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휴양업·유원시설업, 관광 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출판인쇄업, 광고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 예술가는 제외한다) 등 39개 업종 ○ (감면율) 중기업과 소기업을 분류하여 5~30% 감면 ○ 일몰기한 : 2011. 12. 31.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일몰연장 : 2014. 12. 31. (3년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2)

가. 개정취지

-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거래투명성을 제고하여 가격경쟁을 통한 유류가격 인하효과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 한국거래소(KRX)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한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LPG 등) 공급자 ○ 공제율 :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 최저한세 적용, 이월공제 허용 ○ 일몰기한 : 2013. 12. 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6 추계과세기 감면배제 범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가. 개정취지

- 범칙사건 조사 등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하는 경우 납세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배제하기 어려워 조세회피 소지가 있는 점 감안
 -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경우에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배제 사유 ○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해 경정하는 경우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 신고하는 경우	☐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배제 사유 ○ (좌 동) ○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7 최저한세 배제 대상에서 대기업 R&D 비용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제3항)

가. 개정취지

- R&D에 대해서는 충분히 세제지원하고 있는 점, 다른 세액공제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금액은 최저한세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R&D 세액 공제 범위 ○ 중소기업 : R&D 비용* 전액 * R&D 인력 인건비, 원재료비 등 ○ 대기업 :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 최저한세 적용제외 대상에서 대기업의 R&D 비용 제외 ○ 중소기업 : (좌 동)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8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가. 개정취지

- 자동화 시설 등 고용대체 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
 - 자동화시설은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세제지원이 없어도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범용화된 시설에 해당하는 점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의 범위 ○ 컴퓨터 및 제어설비, 설계자동화 설비, 가공 및 생산 자동화 설비, 원료·부품 등 연속·반복 공급 및 이송설비, 자동계측·계량설비, 자동보관설비, 로봇 및 캠(CAM)설비 ○ 전기통신설비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의 범위 조정 <삭 제> - 단, 시설물 안전관리·환경오염관리 등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설비는 세액공제 유지 ○ (좌동) → 별표 2에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8.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9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가. 개정취지

-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전자신고제도의 조기 정착·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나,
 - 2005년 이후 전자신고율이 정체된 점, 동 제도를 통해 과세관청의 신고서 입력비용, 오류 축소 등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동 세액공제한도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연간 4만원(법인세·소득세 2만원, 부가가치세 2만원) 세액공제 ○ 세무사·회계사 : 연간 300만원 ○ 세무·회계법인 : 연간 800만원	☐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세무사·회계사 : 연간 400만원 ○ 세무·회계법인 : 연간 1,0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별표 1)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인력 파견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7% 세액 공제제도 ☐ 목적 :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기금 사용용도 ① 연구개발 지원 - 시험용시설 활용지원, 견본품·부품 구입지원 등 <추 가> ② 인력개발 지원 ③ 생산성 향상 지원 ④ 해외시장 진출 지원 <추 가>	☐ 대상 범위 확대 ☐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추가 ☐ 기금 사용용도 추가 ① 연구개발 지원 - 대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인력 파견 ② ~ ④ (좌동) 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지원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기술도입지원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41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가. 개정취지

- 농식품투자조합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벤처기업, 창업자, 신기술금융업자	□ 창업투자조합 등의 범위에 ‘농식품 투자조합’* 추가 * 등록 후 3년 이내 출자금의 60% 이상을 농식품경영체(예 : 영농조합법인 등 농어업경영체, 식품사업자, 농림수산물식품의 소재 및 생산설비 제조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양도하는 주식·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

4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3조)

가. 개정취지

-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대학재원 확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 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벤처기업,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출자대상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한정) 추가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이 출자(20%이상)하여 만든 회사 ☐ 양도차익 등이 비과세되는 출자 대상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43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가. 개정취지

- 물류기업의 구조개편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1년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이 자가물류 시설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사후관리 : 시설양도후 3년간 제3자물류 비용이 70% 이상일 것 ○ 적용기한 : 2013. 12. 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4 장학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가. 개정취지

- 장학사업 비중 확대를 유도하고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용 재원 확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학재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대상 : 지출액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 방법 : 수익사업소득의 80% 손금산입 <추 가>	○ 지출액의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사용시 손금산입한도를 100%로 인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5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가. 개정취지

- 문화접대비의 최소금액 기준을 낮춰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실효성 제고하고, 문화재 관람료를 문화접대비 범위에 추가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문화접대비를 총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손비 인정 * 일반 접대비 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 : 1,800만원) + 수입금액×적용한도율* <table border="1"> <thead> <tr> <th>수입금액</th><th>적용한도율</th></tr> </thead> <tbody> <tr> <td>100억원 이하</td><td>0.2%</td></tr> <tr> <td>100 ~ 500억원</td><td>0.1%</td></tr> <tr> <td>500억원 초과</td><td>0.03%</td></tr> </tbody> </table>	수입금액	적용한도율	100억원 이하	0.2%	100 ~ 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 최소금액 기준 하향 조정 : 3% → 1% * 총접대비의 1% 초과시 손금으로 추가 인정 ☐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등록 문화재*의 입장권 구입 추가 * 예 : 국보, 보물, 사적 등 ☐ 적용기한 : 2014. 12. 31. (3년 연장)
수입금액	적용한도율								
100억원 이하	0.2%								
100 ~ 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 문화접대비 범위 ☐ 문화예술·공연·전시회·박물관·운동경기·관광공연장·박람회 입장권 구입 등 ☐ 적용기한 : 2011. 12. 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일몰 연장 : 2012. 1. 1.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최소기준 하향조정 :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문화접대비 범위확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6 중소기업 유예제도 적용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가. 개정취지

○ 관계회사제도* 기준 변경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어,

*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상시근로자수·매출액·자산총액 등) 판단시 출자관계 형성 기업간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

- 규모기준 변경, 상호출자제한 기준 변경,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직·간접 소유기준 변경 등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유예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4년)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규모 기준, 예 : 제조업 300명 미만)의 변경 ☐ 상호출자제한 기준 변경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30% 이상 직·간접 소유기준 변경 <신 설>	☐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4년) 적용 추가 (좌 동) ☐ 「중소기업기본법」의 관계회사 기준 변경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47 대손충당금 익금산입 유예규정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성을 위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2012. 1. 1. 이후 K-IFRS 도입 법인에도 특례규정 적용
 - 다만, 종전(K-GAAP)과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이 동일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은 지원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 K-IFRS 도입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감소하여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 환입액만큼 익금에서 제외 ○ 적용대상 : 내국법인 ○ 기간 및 대상기업 : 2011. 12. 31. 이전에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 ☐ 익금불산입액의 익금산입 ○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 적용대상 확대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추가 ○ 기간 확대 : 2013. 12. 31. 이전에 K-IFRS 적용 기업으로 확대하되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 제외 ☐ 익금산입 유예기간 연장(1년) ○ 2013. 1. 1. 이후 → 2014. 1. 1. 이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12. 31.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8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가. 개정취지

- 새로운 공동사업 형태에 대하여 세제상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에 대해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에게 귀속시켜 과세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추가 * 합자회사와 유사하지만 법인격이 없고, 계약에 따라 유한책임조합원도 업무집행이 가능한 점에서 차이 (미국의 Limited Partnership과 유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4. 15. (개정 상법 시행일) 이후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가. 개정취지

- 국립대학교의 법인화 후에도 사립학교와 유사한 수준으로 세부담을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학교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 * 한도 : 수익사업소득금액 × 100% ○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등 <추 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발전기금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편 . 법인결산

수동결산(일반전표)->자동결산(결산자료입력)->제조원가명세서->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재무상태표

01 수동결산-12월31일 일반전표입력



1. 실제 매출과 장부상의 매출회계처리 확인

매출액이 매출환입 및 에누리과 매출할인을 차감한 순액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어야 하며 연중의 회계처리 내용중에서 실제매출과 장부상의 매출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매출의 확인은 일반적으로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에 반영된다.

2. 보고기간종료일 시점의 실물자산과 장부상 내용을 비교확인

재무상태표의 각 계정과목에 대한 내용은 계정과목별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실제의 내용과 장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고속의 현금을 확인하고, 예금이나 단기금융상품은 통장잔액이 장부상의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실제 통장잔액이 장부와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차이를 확인하지 않고 결산을 마무리하면 나중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마이너스통장을 잘 확인한다.

3. 현금과부족 정리

(1) 실재(금고) 현금잔액 < 장부(현금출납장)상 현금잔액

장부상 현금잔액보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나 결산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현금과부족을 잡손실로 대체한다.

기	중	현금과부족	× × ×	현금	× × ×
12월	31일	잡손실	× × ×	현금과부족	× × ×

(2) 실재(금고) 현금잔액 > 장부(현금출납장)상 현금잔액

장부상 현금잔액보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은 경우로 결산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과부족을 잡이익으로 대체한다.

기	중	현금	× × ×	현금과부족	× × ×
12월	31일	현금과부족	× × ×	잡이익	× × ×

4. 미사용 소모품의 계상

(1)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소모품의 구입시에 비용인 소모품비계정으로 처리하고, 결산시 미사용 잔액을 자산 계정인

소모품계정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사례]

①소모품 500,000원 현금 구입시

(차) 소모품비 500,000원 (대) 현금 500,000원

②기말 소모품 재고액이 200,000원 인 경우

(차) 소모품 200,000원 (대) 소모품비 200,000원

(2)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

소모품의 구입시에 소모품계정인 자산으로 처리하고 결산시 사용액을 비용 계정인 소모품비 계정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사례]

① 소모품 500,000원 현금 구입시

(차) 소모품 500,000원 (대) 현금 500,000원

②기말 소모품 재고액이 200,000원 인 경우

(차) 소모품비 300,000원 (대) 소모품 300,000원

5. 단기매매증권평가

상승시의 회계처리(공정가액>취득원가)

(차)단기매매증권 (대)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또는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하락시의 회계처리(공정가액<취득원가)

(차)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또는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대)단기매매증권

6. 재고자산의 감모 및 평가

상품, 제품, 원재료, 재공품 등은 재고자산수불부를 통하여 기초의 금액과 입고, 출고 된 금액을 확인하고 실제의 기말잔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가계산이나 매출원가대체의 분개가 함께 발생한다.

(제품재고액 > 실제재고액)

(차)재고자산감모손실(비정상적) × × × (대)제품 × × ×

(취득원가 > 시가(순실현가치))

(차)재고자산평가손실(또는 매출원가) × × × (대)제품평가충당금 × × ×

900.재고자산평가손실, 구분 : 4.평가손실, 관계 : 150(제품)

173.제품평가충당금, 구분 : 6.평가충당금, 관계 : 150(제품)

7. 당좌차월 처리

2/1 상품 500,000원을 매입하고, 수표발행 지급시(당좌예금잔액 300,000원)

(차) 상	품	500,000원	(대) 당 좌 예 금	300,000원
			당 좌 차 월	200,000원

3/2 현금 100,000원을 당좌예입시

(차) 당 좌 차 월	100,000원	(대) 현	금	100,000원
-------------	----------	-------	---	----------

12/31 결산시

(차)당좌차월	200,000원	(대)단기차입금	200,000원
---------	----------	----------	----------

8. 유동성대체

유동성장기부채의 계정이 재무상태표일 현재 적절하게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다.

(차)장기차입금	(대)유동성장기부채
----------	------------

9. 비용의 이연(선급비용)

이미 지급한 비용 중 차기에 속하는 금액은 해당 비용계정의 대변에 기입하여 차감하고, 자산계정인 선급비용계정 차변에 기입하여 차기로 이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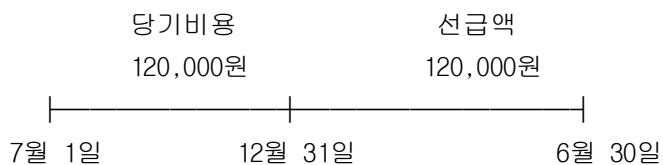
[사례]

당기 7월 1일에 자동차 보험계약을 맺고 1년분 보험료 240,000원을 미리 지급하였다.

(차) 보험료	240,000원	(대) 현	금	240,000원
---------	----------	-------	---	----------

결산일(12/31)자 수정전잔액시산표에는 보험료가 240,000원으로 계상된다.

보험기간은 당기 7월 1일부터 다음년도 6월 30일인데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당기에 모두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비용의 과대계상을 초래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차) 선급비용	120,000원	(대) 보험료	120,000원
----------	----------	---------	----------

10. 수익의 이연(선수수익)

당기에 받은 수익 중 차기에 속하는 금액은 해당 수익계정 차변에 기입하여 차감하고, 부채

계정인 선수수익계정 대변에 기입하여 차기로 이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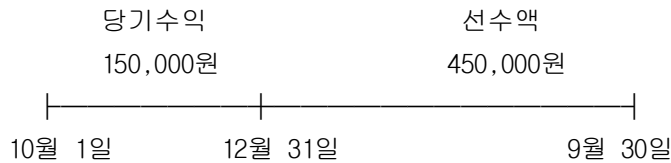
[사례]

당기 10월 1일에 임대계약을 맺고 1년분 임대료 600,000원을 미리 받았다.

(차) 현 금 600,000원 (대) 임대료 600,000원

결산일(12/31)자 수정잔액시산표에는 임대료수익 600,000원이 계상된다.

이 중 450,000원(=600,000*9/12)은 차기의 수익으로서 다음 연도에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차) 임대료 450,000원 (대) 선수수익 450,000원

11. 비용의 예상(미지급비용)

당기에 속하는 비용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으로 지급기일미도래분 해당 비용계정 차변에 기입하여 가산하고, 부채계정인 미지급비용계정으로 처리한다.

[사례]

12월 1일에 만기가 6 개월, 연 이자율 6%의 이자후급지급조건으로 10,000,000원을 신한은행에서 차입하였다. 결산일(12/31) 현재 발생한 이자비용은

$$\begin{array}{ccccccc} \text{단기차입금} & \times & \text{이자율} & \times & \text{기간} & = & \text{이자비용} \\ \hline 10,000,000\text{원} & \times & 6\% & \times & 1/12 & = & 50,000\text{원} \end{array}$$

결산일(12/31)에 다음과 같은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차) 이자비용 50,000원 (대) 미지급비용 50,000원

12. 수익의 예상(미수수익)

당기에 속하는 수익으로서 아직 받지 않은 금액은 해당 수익계정 대변에 기입하여 가산하고, 자산계정인 미수수익계정으로 처리한다. 미수수익은 미지급비용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02

자동결산-1월에서 12월, 결산자료입력

1.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도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여야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분개를 할 수 있다.

$$\text{퇴직급여(설정액)} = \text{퇴직급여 추계액} - \text{설정전 퇴직급여충당부채}$$

추계액은 당기말에 전임직원이 퇴사시 지급되어야 될 퇴직금의 합계이다.

근로의 제공은 회사의 수익창출에 간접적인 공헌을 한다. 따라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기간경과에 따른 퇴직금증가분을 매 회계연도에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급여이다.

계정과목	계정
퇴직급여충당부채	부채 → 장래의 퇴직시에 지급해야 할 의무
퇴직급여	비용 →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인식

[자동계산 CTRL+ F8, 퇴직충당]

[illegible]

퇴직총당을 클릭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입력한후 자동으로 결산에 반영가능하다.

2. 대손충당금(보충법)설정

합계잔액시산표상의 채권잔액을 조회한 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text{매출채권잔액} \times \text{대손예상률}) - \text{대손충당금잔액} = (+)\text{상각}, (-)\text{환입}$$

상각분 → 결산자료입력란에 입력

(차)대손상각비(매출채권) (대)대손충당금
기타의대손상각비(기타의 채권)

환입분 → 일반전표입력에서 수동결산

(차)대손충당금 (대)대손충당금환입(판관비)

[자동계산 F7, 대손상각]

대손상각

대손율(%) 1.00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	추가설정액(결산반영) [(금액x대손율)-설정전총당금잔액]	유형
0108	외상매출금	246,735,892	0109	대손충당금	832,652	1,634,707	판관
0110	받을어음	166,505,000	0111	대손충당금	500,000	1,165,050	판관
0246	부도어음과수표	1,320,000	0247	대손충당금			판관
0114	단기대여금	60,500,000	0115	대손충당금			영업외
0120	미수금	40,150,000	0121	대손충당금			영업외
0131	선급금	43,761,716	0132	대손충당금			영업외
대손상각비 합계						2,799,757	판관

새로불러오기 결산반영 취소(Esc)

대손상각을 클릭하여 대손율을 입력후 자동반영이 가능하다.

3. 감가상각비

고정자산등록(반드시 연말결산으로 재계산)을 한 비유동자산항목을 불러오기 하여 자동월할 계산 반영한다.

[자동계산, F8, 감가상각]

감가상각

코드	계정과목명	경비구분	고정자산등록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조회기간월 수/내용월수)	결산반영금액
020200	건물	판관	5,250,000	5,250,000	5,250,000
020600	기계장치	제조	20,765,500	20,765,500	20,765,500
	감가상각비(제조)합계		20,765,500	20,765,500	20,765,500
	감가상각비(판관)합계		5,250,000	5,250,000	5,250,000

새로불러오기 결산반영 취소(Esc)

4. 원가계산(당기제품제조원가)

기업실무에서는 제조원가명세서에서 원가계산과정을 통하여 재공품과 제품의 원가를 계산한다.

$$\text{당기제품제조원가} = \text{기초재공품} + \text{당기총제조비용} - \text{기말재공품}$$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되는 감모손실을 반영한후 다음 실사액을 입력한다.

기말원재료 실사액입력

기말재공품 실사액입력

기말재공품 실사액입력

[결산자료입력 화면]

Ex	종류	F1	도움	F2	코드	F3	원가설정	F4	원가추가	F5	결산분개작성	F6	잔액조회	F7	감가상각	F8	대손상각	F9	회계출당	F10	회계출당	F11	인쇄	F12	조회
기 간		2012		년	01	월	~		2012		년	12	월	자동 결산분개 완료											
±	코드	과 목										결산분개금액	결산전금액	결산반영금액	결산후금액										
	1. 매출액											1,710,060,000		1,710,060,000											
	0401	상품매출											615,060,000		615,060,000										
	0404	제품매출											1,095,000,000		1,095,000,000										
	2. 매출원가										1,081,881,834	1,146,881,834		1,187,646,834											
	0451	상품매출원가										145,461,200			180,461,200										
	0146	② 당기 상품 매입액											180,461,200		180,461,200										
	0146	⑩ 기말 상품 재고액																							
	0455	제품매출원가										936,420,634			1,007,185,634										
	1)원재료비										570,846,431	590,846,431		590,846,431											
	0501	원재료비										570,846,431	590,846,431		590,846,431										
	0153	① 기초 원재료 재고액											67,082,431		67,082,431										
	0153	② 당기 원재료 매입액											523,764,000		523,764,000										
	0153	⑩ 기말 원재료 재고액																							
	3)노 무 비										277,400,000	277,400,000	20,000,000	297,400,000											
	1). 임금 외										277,400,000	277,400,000		277,400,000											
	0504	임금										201,600,000	201,600,000		201,600,000										
	0505	상여금										75,800,000	75,800,000		75,800,000										
	0508	2). 퇴직급여(전입액)												20,000,000	20,000,000										
	0550	3). 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																							
	7)경 비										23,929,190	23,929,190	20,765,000	44,694,190											
	1). 복리후생비 외										23,929,190	23,929,190		23,929,190											
	0511	복리후생비										1,343,010	1,343,010		1,343,010										
	0513	접대비										13,153,520	13,153,520		13,153,520										
	0514	통신비										299,760	299,760		299,760										
	0516	전력비										2,844,720	2,844,720		2,844,720										
매출액: [1,710,060,000] 당기순이익: [192,925,221] 소득평율: 11.28%																									

5. 매출원가의 인식

기중에 매출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에, 매건 별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매출원가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기말에 기말재고자산을 실사하여 매출원가를 확정하게 된다.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또는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재고(실사액)

(차)상품매출원가(또는 제품매출원가) (대)상품(또는 제품)

6. 법인세비용 인식(결산자료입력에서 선납세금과 미지급세금 동시입력가능)

(1)법인세비용 인식

(차) 법인세비용 × × (대) 선납세금 × ×
미지급세금(=당기법인세부채) × ×

[주]: 법인세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의 회계처리도 함께 하며, 선납세금은 원천징수,중간예납 및 수시부과시 발생한다.

(2) 법인세 등의 중간예납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인 중간예납의무가 있다. 사업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 31일이라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한다.

모두 입력이 끝나면 툴바의 F3(전표추가)를 클릭하여 일반전표입력에 결산분개를 발생시켜 준다. 결산분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TRL+F5를 클릭하여 대체된 분개를 삭제후에 다시 전표를 발생시켜 준다.

[결산요약]

위의 사항을 결산자료입력에 수동으로 입력도 가능하지만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퇴직급여설정액은 툴바의 각 항목을 클릭하여 자동으로 반영가능하다.

수동결산내용 → 일반전표입력(12월31일)

- ①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소모품, 현금과부족, 법인세 선납세금의 정리, 부가가치세계정의 정리, 대손충당금환입, 유가증권의 평가, 외화환산손익 재고자산 평가손실(계정과목및적요등록에 재고자산관계코드 입력시 자동분개가능)와 감모손실계상 등

② 자동결산내용 → 결산자료입력

제조업 : 455.제품매출원가 - 500번대 경비선택

기말 실지재고금액을 입력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입력-감가상각(F7)이용하여 자동입력

퇴직급여충당부채전입액 입력-퇴직충당(CTRL+F8)을 이용하여 자동입력

대손상각비의 입력 - 대손상각(F8)을 이용하여 자동입력

• 무형자산의 상각액 입력

• 법인세비용등의 입력 (선납세금과 법인세등을 동시에 자동결산도 가능)

☒ 위의 사항을 일반전표입력에 직접입력하여도 무방

☞ 대손상각비란 입력시 주의(보충법) : 합계잔액시산표 채권잔액

(매출채권잔액 × 대손예상률) - 대손충당금잔액 = (+)면 상각, (-)면 환입

상각분 → 결산자료입력란에 입력

환입분 → 일반전표입력에서 수동결산 (차)대손충당금 (대)대손충당금환입(판)

☞ 법인세비용 입력시 법인세추산액에서 선납세금을 차감 후 미지급액만 입력하거나

선납세금계정에 계상된 경우 선납세금과 미지급세금을 결산자료입력에서 자동결산을 통해서 자동분개도 가능하다.

③ 입력종료후 → 반드시 “전표추가” 아이콘 클릭

결산분개를 일반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 예(Y)

④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 조회 (조회를 하지 않아도 당기순이익 산출가능)

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 조회없이 작성가능)

편집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편집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 아니오(N)

⑥ “전표추가” 아이콘 클릭 (처분내역이 없는 경우나 중간결산시도 전표추가를 해야 함)

일반전표에 대체분개를 추가하시겠습니까? → 예(Y)

⑦ 재무상태표 조회

※ 결산의 오류수정 : 일반전표입력 결산월(12월)에서 Shift+F5를 눌러 조회 후 해당 내용을 선택한후 삭제하고 다시 분개 발생시킨다.

03 제조원가명세서

컨버트후 기초분의 타계정대체와 당기제품제조원가 확인하여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당기 제품제조원가가 정확히 반영되는지** 체크한다.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의 조회는 선택 사항이므로 바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이동가능하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제출용과 표준용을 조회하여 데이터를 생성하여 준다.

04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의 당기제품제조원가가 정확히 반영되었으면, 주식수를 입력한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확인한다. 중단손익이 있으면 톨바 F8을 눌러 중단사업손익을 입력한후 다음과 같은 분개를 일반전표입력 12월31일(결산일)자로 분개를 추가한다.

(차)자산(현금,미수금) (대)손익
부채(차입금등)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제출용과 표준용**을 조회하여 데이터를 생성하여 준다.

0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 손익대체

수익비용계정의 마감과 마찬가지로 손익대체도 전산회계시스템에서 자동전표생성으로 회계처리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결산을 마무리하는 최종적인 분개로서 손익대체의 분개가 존재한다.

(차) 손익 ×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 × (실무상 계정 375.이월이익잉여금)

상기 손익대체 분개를 함으로써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회계처리가 마무리된다.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에 반영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실무상으로 대부분의 전산회계프로그램은 자동전표에 의하여 손익대체 분개를 한다. 상기 결산정리분개의 내용이 수정후시산표에 반영되고, 그 결과 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의 서식이 작성되는 것이다.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 및 회계처리

일반적으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은 법인결산을 하면서 작성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법인 결산확정일에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면서 확정된다.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 (대) 미지급배당금 × ×

(375.이월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임의적립금등 × ×

2. 중간배당금

중간배당 결정시 375.이월이익잉여금이 아닌, 372.중간배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기하며 , 부채계정인 미지급배당금계정에 대기한다. 중간배당은 상법상으로 년 1회, 이사회결의에 의해 현금 또는 주식으로 가능하며, 결산시 배당금의 1/10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되는 것은 동일하다.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한편 개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주식배당, 현금배당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이다.)

[5백만원 중간배당(현금)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일반전표입력에서 중간배당금에 대한 회계처리후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차)372.중간배당금 5,000,000원 (대)미지급배당금 5,000,000원

I. 미지불이익잉여금				13,200,000
1. 전기이월미지불이익잉여금			15,000,000	
2.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0369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3. 전기오류수정이익	0370	전기오류수정이익		
4. 전기오류수정손실	0371	전기오류수정손실		
5. 중간배당금	0372	중간배당금	-5,000,000	
6. 당기순이익			3,200,000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1.				
2.				
합계(I + II)				13,200,000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500,000
1. 이익준비금	0351	이익준비금	500,000	
2. 재무구조개선적립금	0354	재무구조개선적립금		
3. 주식환입발행차금상각액	0391	주식환입발행차금		

모두 입력이 끝나면 처분예정일(주총승인일)을 입력한후 툴바의 **F6(전표추가)**를 클릭하여 일반전표입력에 손익대체분개를 발생시켜준다. 다시 전표추가 하고자 하면 일반전표입력에서 **SHIFT+F5**를 눌러 삭제한후 실행한다.

일괄삭제

◆전체월,선택항목검색
☒ 결산분개(전체월)

◆현재월
☒ 결산분개(현재월)

전체선택 전체취소 톨장거러치 계정102=조정

전체항목보기 선택항목검색 확인(Tab) 취소(Esc)

06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의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제출용과 표준용**을 조회하여 데이터를 생성하여 준다..

07 결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중의 중요한 항목에 대하여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변동관계를 자세하게 보고하는 보조적 명세서이다.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가지 명세서와 경영자의 분석보고서나 검토보고서 등과 같은 설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08 현금예금조정



1. 현금 일괄 조정

(1)검토월

확인하고자 하는 기간을 입력한다.

(2)계정과목

분개시 현금의 상대 계정을 입력하는 항목이다.

개인은 2.인출금을 법인은 1.가지급금, 가수금을 선택한다.

(3)조정금액

최소잔액 : 각 일자별 최소한 보유하고자 하는 현금금액을 입력한다.

최대잔액 : 각 일자별 최대한 보유하고자 하는 현금금액을 입력한다.

조정단위 : 현재 검토전 현금 잔액에서 남기고자 하는 현금 금액까지 변경단위를 입력한다.

(4)수정전금액

각 일자별 전표의 현금 잔액을 반영한다.

(5)직전조정반영 수정전 금액

현재 일자 전일까지 조정된 수정 후 금액을 반영한다.

(6)조정액

최대 잔액 혹은 최소 잔액 까지 보유하기 까지 조정된 금액을 반영한다.

2.현금 직접 조정

(1)검토월

확인하고자 하는 월을 입력한다.

(2)구분

1.출금 또는 2.입금 또는 3.차변 또는 4.대변을 입력한다.

(3) 차변 또는 대변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선택한다.

1.가지급금 또는 2.가수금 또는 3.인출금 또는 4.현금을 입력한다.

(4) 수정후 금액

수정전 금액에서 수정분개 내역을 반영한 금액이 수정후 금액이 된다.

3.당좌 예금 조정

(1)검토월

확인하고자 하는 월을 입력한다.

(2)금융기관

확인하고자 하는 당좌계좌의 금융기관 코드를 입력한다.

(3)당좌예금 입출금 현황

금융기간별 당좌예금 잔액이 있을 경우 예입금액에 반영한다.

수정분개내역에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일자에 예입금액 또는 출금금액에 반영한다.

수정분개내역에서 1.출금의 금액은 예입금액에 반영된다.

2.입금의 금액은 출금금액에 반영된다.

4.보통 예금 조정

(1)검토월

확인하고자 하는 월을 입력한다.

(2)금융기관

확인하고자 하는 보통계좌의 금융기관 코드를 입력한다.

(3)보통예금 입출금 현황

금융기간별 보통예금 잔액이 있을 경우 예입금액에 반영한다.

수정분개내역에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일자에 예입금액 또는 출금금액에 반영한다.

수정분개내역에서 1.출금의 금액은 예입금액에 반영된다.

2.입금의 금액은 출금금액에 반영된다.

현금입출조정					[2009](주)놀라워-법인조정 6기 2012년 01월 01일 ~ 2012년 12월 31일				
설정	종료	F1	도움	F2	코드	F4	전표추가	F5	삭제
							F5	전체삭제	F9
								인쇄	F12
								조회	
현금입출조정					보통예금조정				
계정코드 102-조정									
검 토 월 : 2012년 01월 ~ 2012년 12월									
계정과목 : 1(1.가치급금,가수금, 2.인출금)									
조정금액 : 최소잔액: 100,000 최대잔액: 1,000,000 조정단위: 100,000									
월/일	수정전금액	직전조정반영수정전금액	조정액	수정후금액	월/일	분개			
						차변	대변		
01-00	13,500,000				01-02	가치급금	7,600,000	현금	7,600,000
01-02	8,500,000	8,500,000	-7,600,000	900,000	01-13	가치급금	25,300,000	현금	25,300,000
01-05	8,488,200	888,200		888,200	01-15	현금	20,800,000	가치급금	20,800,000
01-08	8,378,200	778,200		778,200	01-19	가치급금	70,500,000	현금	70,500,000
01-13	33,018,200	25,418,200	-25,300,000	118,200	01-20	현금	1,100,000	가치급금	1,100,000
01-14	33,016,820	116,820		116,820	01-22	현금	10,200,000	가치급금	10,200,000
01-15	13,016,820	-19,883,180	20,800,000	916,820	01-25	현금	23,600,000	가치급금	23,600,000
01-16	12,706,610	606,610		606,610	01-28	현금	19,200,000	가치급금	19,200,000
01-19	82,706,610	70,606,610	-70,500,000	106,610	01-30	현금	26,700,000	가치급금	26,700,000
01-20	82,418,430	-181,570	1,100,000	918,430	01-31	가치급금	4,800,000	현금	4,800,000
01-22	71,418,430	-10,081,570	10,200,000	118,430	02-01	가치급금	22,000,000	현금	22,000,000
01-25	48,626,270	-22,673,730	23,600,000	926,270	02-04	가치급금	32,700,000	현금	32,700,000
01-27	48,625,470	925,470		925,470	02-10	현금	1,100,000	가치급금	1,100,000
01-28	28,625,470	-19,074,530	19,200,000	125,470	02-19	가치급금	2,400,000	현금	2,400,000
01-30	2,732,640	-25,767,360	26,700,000	932,640	02-20	가치급금	5,600,000	현금	5,600,000
01-31	6,732,640	4,932,640	-4,800,000	132,640	02-24	현금	200,000	가치급금	200,000
02-01	29,550,660	22,950,660	-22,000,000	950,660	02-25	현금	900,000	가치급금	900,000
02-02	29,542,560	942,560		942,560	02-28	현금	18,500,000	가치급금	18,500,000
02-03	29,470,360	870,360		870,360	03-01	현금	4,300,000	가치급금	4,300,000
02-04	61,427,760	32,827,760	-32,700,000	127,760	03-02	현금	4,300,000	가치급금	4,300,000
02-08	61,413,260	113,260		113,260	03-03	가치급금	44,200,000	현금	44,200,000

09

영수증수취명세서 및 송금명세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이하 “정규 영수증”이라 함)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단, 현금영수증보관의무는 폐지되었음)하여야 한다. 법인이 이러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인 재화·용역거래의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하며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①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 ② 다음의 경우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 가.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 나.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거래정보
- (2) 현금영수증
- (3) 세금계산서
- (4) 계산서
- (5) 원천징수영수증

* 기명식 선불카드는 정규영수증으로 인정

2. 정규영수증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출증빙서류

- (1)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 (2)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 (3)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계산서

3.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빙 수취 의무

- (1)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2)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외의 지출액에 대하여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4.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 (1)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①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니다.

(예) 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나. 법인이 종업원 개인 소유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다.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전기·수도요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등

② 사업자의 범위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외 예)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다음에 예시하는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지 아니하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니다.

- (1)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 (2) 판매장려금 또는 포상금 등 지급
- (3)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주의]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를 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임.

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1) 대금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정규영수증 수취를 면제하는 거래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래]

- ①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②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 ③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 ④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 징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거래]

- 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②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③ **전기통신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④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 ⑤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⑥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은 제외함)로부터 주택임대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⑦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⑧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함)을 구입하는 경우
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
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⑨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⑩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⑪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⑫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
이 부담하는 경우
- ⑬ 재화공급계약·용역공급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
하는 경우
- ⑭ 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
액을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
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의 거래

- 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②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외의 거래를 제외한다)
- ③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택시운송용역 외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④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
- ⑤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⑥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⑦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⑧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⑨ 국제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음의 경우
 -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⑩ 농어민으로부터 접대목적으로 매입한 농축수입산물이 있는 경우

7.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제재

법인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
취하지 아니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의 2%를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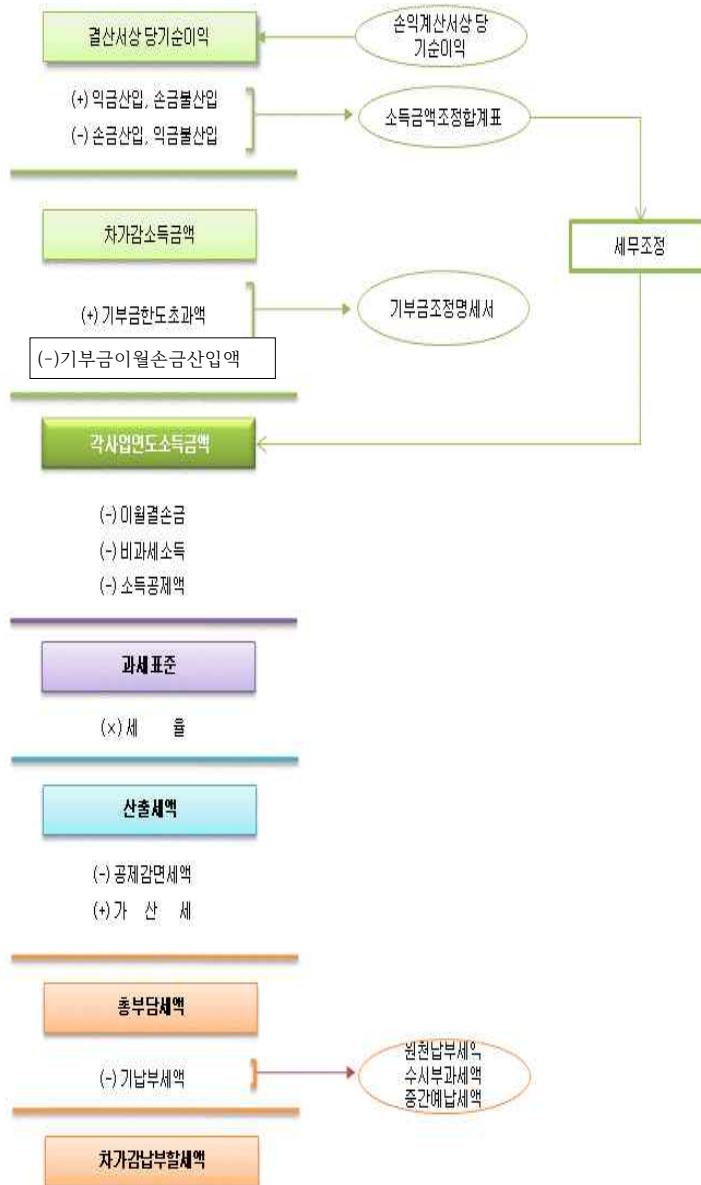
(1) 가산세 적용 제외 법인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 ②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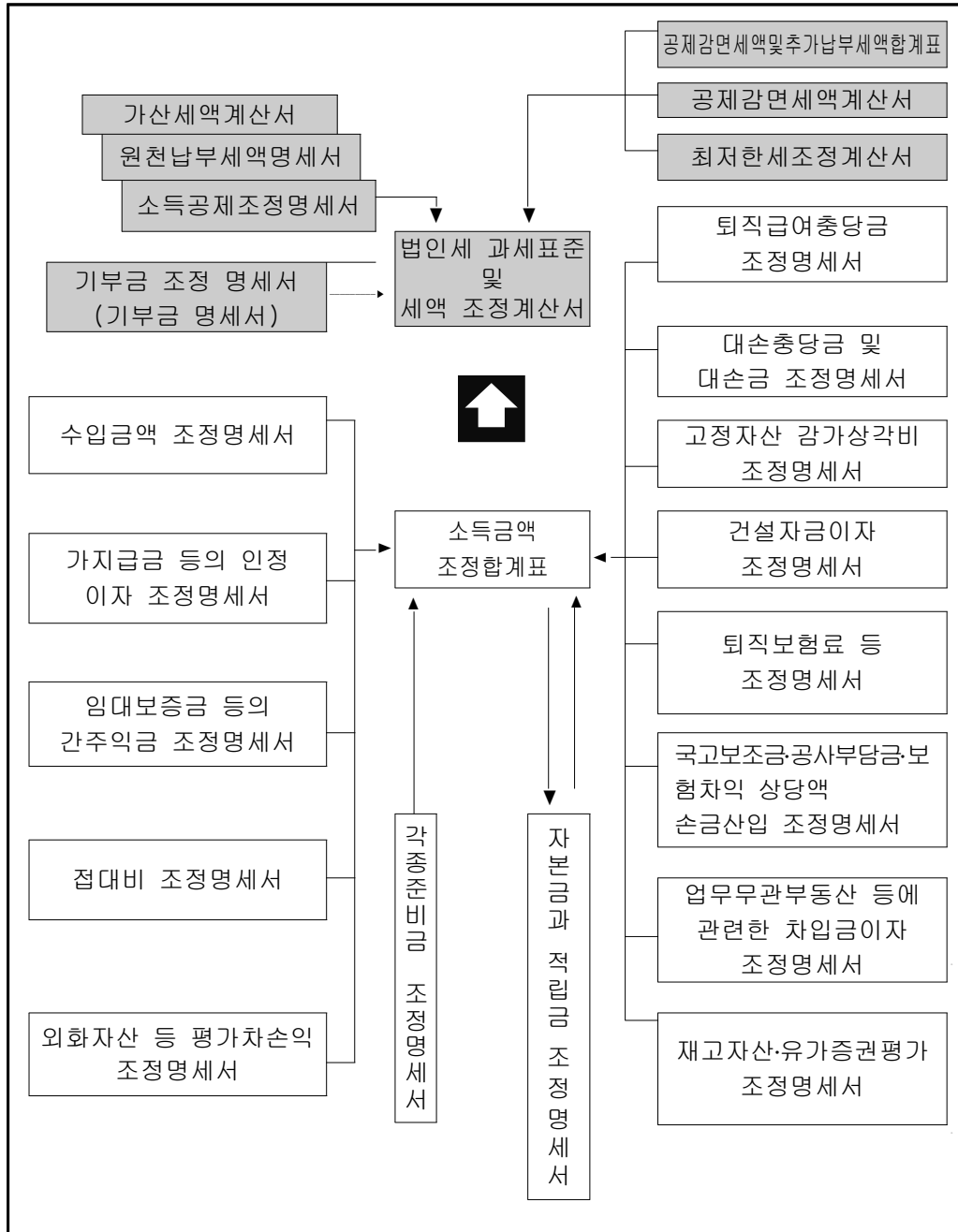
(2)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에도 기타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금액은 법인의 경비 등으로
인정된다.

3편. 법인세조정

01 법인세 계산구조



02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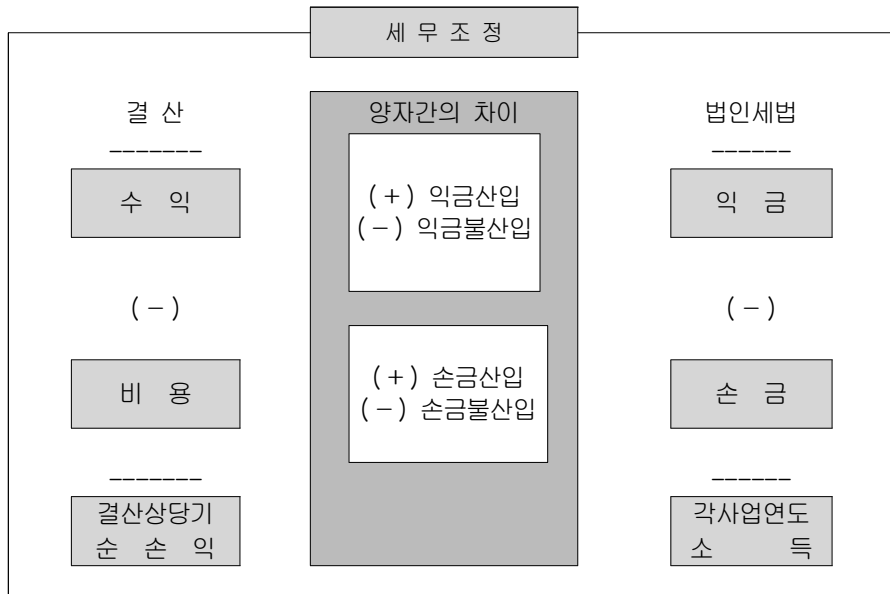


03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1. 조정의 의미

- (1) 결산조정 :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
- (2) 신고조정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양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종류

(1) 결산 조정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
-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 ③ 퇴직급여충당금
- ④ 대손충당금

-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⑥ 대손금(부도어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비망금액 1,000원)
- ⑦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
- ⑧ 천재·지변, 화재, 폐광, 수용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
- ⑨ 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당해 주식 등의 평가손(비망금액 1,000원)
 -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 ☒ 2008.2.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추가
- ⑩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그 주식평가손(비망금액 1,000원)
- ⑪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비망금액 1,000원)

(2) 신고 조정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
- ② 퇴직연금 분담금, 선급비용 등
- ③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④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 ⑤ 제 총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 ⑥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
- ⑦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 ⑧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⑨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설정(이익처분후 설정)

04 소득처분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상 당기 순손익에서 익금산입사항과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 사항과 손금산입사항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익금에 가산된 금액 등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한다.

1. 소득처분의 종류

(1) 유 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 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세무조정 시에는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소득 기말잔액을 고려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 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을 말한다. 또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인정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다.

① 인정상여의 지급시기

- ㉠ 신고조정시의 처분된 상여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일
- ㉡ 결정 또는 경정 시에 처분된 상여 →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② 인정상여의 수입시기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3) 배 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과 임원 제외)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보는 것이다.

①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출자자의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법인에게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

②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 ㉠ 신고조정 시에 처분된 배당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일
- ㉡ 결정 또는 경정 시에 처분된 배당 →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③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4) 기타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임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다.

①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그 귀속자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없음)이 된다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②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신고조정 시에 처분된 기타소득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일
결정·경정 시에 처분된 기타소득 →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③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기타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5) 기타사외유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소득이 내국 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금액과 법인세법시행령 각목의 익금산입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인정상여와 인정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자료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여야 한다.

05 기초정보관리



기초정보관리

- 회사등록
- 환경등록
- 계정과목및적요등록
- 조정과목등록
- 세무조정계산서총괄표
- 세무조정계산서일괄출력
- 세무조정계산서표지
- 결산보고서표지

1. 회사등록

회사등록사항은 각종서식에 반영되므로 가장먼저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1) 회계연도

작업할 회사의 기수와 회계연도를 입력한다.

회사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명백히 계산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일정기간을 설정하는데, 이를 회계연도 또는 회계기간이라고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1.1 ~ 12.31까지를 1회계연도로 정하고 있으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12.31까지를 1회계연도로 정하고 있다. 법인사업자의 회계기간을 회사 정관에서 규정하며, 회계기간 종료일에 따라 12월말 법인(1월1일 ~ 12월 31일), 3월말 법인(4월1일 ~ 다음해 3월31일)등으로 부르고 있다.

(2)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일정규칙에 의해 부여된 번호이므로, 정확히 입력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내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체크 기능이 있어 오류입력의 경우 빨간색 BOX로 표시된다.

(3) 법인등록번호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영업소 또는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앞 4자리는 등기관서 분류번호, 그 다음 2자리는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그 다음 6자리는 일련번호, 마지막 1자리는 오류검색번호이다.

(4)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를 입력한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대표자 1명만을 입력하고 그 밖의 대표자는 ‘외 몇 명’ (예 홍길동외1)으로 입력한다.

(5) 법인구분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본점이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을 입력한다.

(6) 법인종류별구분

상장여부, 영리와 비영리구분등에 따른 종류별번호를 입력한다.

(7) 중소기업여부

중소기업기준검토표에 따른 중소기업여부를 입력한다.

(8) 설립연월일

법인등기부상의 설립연월일을 입력한다.

(9) 개업연월일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 / 월 / 일을 입력한다.

영업(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세법용어로서 사업개시일과 같은 뜻이다. 세법에서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개업일로 규정하고 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주업종코드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종목의 기준경비율코드를 입력한다.

2. 환경등록

전체	회계	원천	법인
1	익제상각 적용대상	1.적용대상(감면)	
2	감가상각 시부인방법	1.계정과목별시부인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조정등록방법	1.조정과목사용	
4	정관상 회사사업년도	1 월 1 일 ~ 12 월 31 일	

(1)표준(법인세)용 재무제표

법인세상 재무제표 작성시 일반법인용과 금융기관용중 선택

(2)건물외유형자산 상각방법

고정자산 간편 등록시 세팅할 상각방법 선택

(3)의제상각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나 면제받은 업체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으로 체크한다.

(4)감가상각시부인방법

감가상각 조정시 자산갯수가 많아 계정과목별로 합하여 시부인 할 경우에는 1.계정과목별시부인을 체크하고, 자산 건건히 시부인하려면 2.자산별시부인(세법상 방법)을 체크한다.

(5)소득금액조정합계표조정등록방법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에서 미리 등록된 조정과목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조정과목사용으로 체크하고, 직접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직접등록을 선택한다.

06 표준재무제표

표준재무제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 표준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이것은 회계관리의 재무제표의 제출용과표준용을 조화하고 와야 자동작성가능하다.

1.표준대차대조표

(1)표준대차대조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작성한다.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증권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 ②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기타 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2)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란에 적는다.

(3) 비유동부채 중에 전환사채등신종사채란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그 밖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등을 사채와 구분하여 별도로 적는다.

일반법인용					
차변잔액	차변합계	계 정 과 목	코드	대변합계	대변잔액
1,480,086,024	10,372,930,379	1. 유동자산	01	8,892,844,355	
1,415,086,024	7,793,026,493	(1) 당좌자산	02	6,377,940,469	
570,972,472	4,939,917,431	1. 현금및현금성자산	03	4,368,944,959	
133,250,000	213,250,000	2. 단기예금	04	80,000,000	
5,300,000	5,300,000	3. 유가증권	05		
404,358,240	2,276,906,000	4. 매출채권	06	1,872,547,760	
60,500,000	60,500,000	5. 단기대여금	07		
		① 주주 · 임원 · 관계회사	08		
60,500,000	60,500,000	② 기 타	09		
33,000,000	33,000,000	6. 미수금	10		
		① 분양미수금	11		
		② 공사미수금	12		
33,000,000	33,000,000	③ 기 타	13		
40,761,716	40,761,716	7. 선급금	14		
		8. 이연법인세자산	73		
166,943,596	223,391,346	9. 기 타	15	56,447,750	
65,000,000	2,579,903,886	(2) 재고자산	16	2,514,903,886	
35,000,000	180,461,200	1. 상품	17	145,461,200	
	936,420,634	2. 제 품	18	936,420,634	
		3. 반제품	19		
10,000,000	872,175,621	4. 재공품	20	862,175,621	
20,000,000	590,846,431	5. 원재료(원자재)	21	570,846,431	
		6. 가설재	22		
		7. 저장품	23		

2.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는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의 작성대상법인이 작성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계속사업과 중단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포함한다.

일반법인용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4. 복리후생비	23	8,921,100	4. 유가증권평가손실	57	
5. 여비교통비	84	427,400	5. 재고자산감모손실	58	
6. 임차료	24		6. 외환차손	59	761,000
7. 접대비	25	41,896,480	7. 외환환산손실	60	
8. 감가상각비	26		8. 지분법손실	61	
9. 무형(이연)자산상각비	27		9.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62	
10. 세금과공과	28	4,094,570	10. 투자자산처분손실	63	1,000,000
11. 광고선전비	29	250,000	11. 유무형자산처분손실	64	20,000,000
12. 차량유지비	85	1,284,750	12. 기부금	65	600,000
13. 연구비	30		13. 사채상환손실	66	
14. 경상개발비	31	39,000,000	14. 보상비(건설업)	67	
15. 대손상각비(충당금전입액포함)	32		15. 법인세추납액	68	
16. 미분양주택관리비	33		16. 준비금등전입액	69	
17. 수주비	34		17. 전기오류수정손실	87	
18.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35	17,800,280	18. 재해손실	78	
가. 수도광열비	201	5,164,800	19. 기타영업외비용	70	
나. 판매수수료	202	4,500,000	가. 잡손실	221	
다. 통신비	203	4,057,750	나.	222	
라. 기타	204	4,077,730	다.	223	
V. 영업손익	36	329,570,222	라. 기타	224	
VI. 영업외수익	37	32,682,256			
1. 이자수익	38	13,442,256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80	320,977,678
2. 배당금수익	39		IX. 법인세비용	81	60,000,000
3. 임대료	40	3,440,000	X. 당기순이익	82	260,977,678

[참고] 법인세비용을 먼저 손금불산입한후 [기타사외유출]처리한다.

07

수입금액조정



수입금액조정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임대보증금등의간주익금조정...
중소기업기준검토표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따라 각종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도 그 귀속사업연도가 세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주의]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기업회계를 적용함에 유의

(1)인도한 상품·제품 등에 대한 매출액 조정

제품·상품 등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으나, 세법상 “인도”의 범위가 일반적인 인도의 개념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조정시 유의하기 바란다.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범위

국내판매 :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가 완료된 날

수출 :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2)시용판매의 수입금액 조정

상대방이 상품 등의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3)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위탁판매 수입금액의 조정

수탁자가 그 상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5)매출할인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6)매출에누리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7)장기할부판매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 할 수 없다. 단, 중소기업은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조정가능하다. 영업외수익에 기재된 부산물매출, 작업폐물매출도 반영한다.

[서식 작성방법]

※ 결산서상 수입금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가 있는 법인은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금액 조정계산

가. ③결산서상 수입금액란에는 계정과목별로 총매출액 및 영업외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이 경우 총매출액은 매출에누리와 환입액 및 매출환입액을 빼서 적고, 영업외수익에 계상된 금액 중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나. ④조정가산란은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나”에 따라 계산된 ⑩조정액 계 및 ⑪조정액 계와 ⑮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 그 금액을 기재한다.

⑤조정차감란은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나”에 따라 계산된 ⑩조정액 계 및 ⑪조정액 계와 ⑮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 그 금액을 기재한다.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⑨도급금액란은 총 도급금액을 적고, ⑫란의 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이 총공사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되, 건설의 경우 수익실현이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작업시간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

나. ⑫진행률에 의한 ⑬란의 누적익금산입액에서 ⑭란의 전기말누적수입계상액과 ⑮란의 당기회사수입계상액을 뺀 금액인 ⑩조정액 계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④조정가산란에 적고, 음수(-)인 경우에는 ⑤조정차감란에 기재한다.

다. ‘나.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또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은 작업진행율이 원칙이지만 ①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라. ‘다. 기타 수입금액’란은 상기 “가”, “나” 외의 수익으로서 조정계산이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⑬구분란에는 총매출액, 위탁판매 및 임대료수입 등으로 적고 ⑮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④조정가산란에 적고, 음수(-)인 경우에는 ⑤조정차감란에 기

재한다. ㉔대응원가란은 결산상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은 대응원가를 적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 15 호서식)”의 해당란에 옮겨 기재한다.

- ④조정가산란의 계와 ⑤조정차감란의 계를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⑩조정액 계, ㉑조정액 계와 ㉕수입금액란의 계를 합계한 금액이 ④조정가산란의 계에서 ⑤조정차감란 계를 뺀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 ⑥조정 후 수입금액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㉔합계의 ④계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조정후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 수입금액조정명세서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 작성한 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된 금액간의 차이를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메뉴이다.

[참고]잡이익의 부산물매출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제품매출에 합산

[예제]수입금액조정명세서 및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 계정과목별 결산서상 수입금액은 제품매출 : 1,095,000,000 상품매출 : 615,060,000 으로 가 정하여 작성한다.
- 수입금액은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며 제품매출중에는 중계무역수출 152,000,000원, 나머 지는 국내매출이다.
- 당해연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매출 : 1,312,900,000원, 영세율매출 : 152,000,000원, 면세수입금액 : 272,160,000원이며, 그 중에는 공장 차량운반구의 매각대금 27,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 제품재고액 중 8,000,000은 타인에게 위탁판매하기위한 위탁품으로서 당기말에 수탁자가 이미 12,000,000에 판매하였으나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답]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						
계정과목		③결산서상 수입금액	조 정		⑥조정후 수입금액 (③+④-⑤)	비 고
①항 목	②계정과목		④가 산	⑤차 감		
1	매 출	1,095,000,000	12,000,000		1,107,000,000	
2	매 출	615,060,000			615,060,000	
3						
계		1,710,060,000	12,000,000		1,722,060,000	

기타수입금액조정등에서
+금액 입력시 가산처리
계정코드 입력시 자동불러옴

2. 수입금액조정명세			
가.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나.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			
다.기타 수입금액		12,000,000	
계		12,000,000	

수입금액조정계산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 기타수입금액조정					
2. 수입금액 조정명세 다. 기타 수입금액					
(23)구 분	(24)근 거 법 령	(25)수 입 금 액	(26)대 응 원 가	비 고	
1 제품매출		12,000,000	8,000,000	위탁매출	
2					

2. 조정등록(F3)

(익금산입) 매출누락 12,000,000(유보발생)

(손금산입) : 매출원가 8,000,000(유보발생)

[답]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업종별수입금액명세서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서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검토

1.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①업 태	②종 목	순번	③기준(단순) 경비율번호	수 입 금 액			
				수입금액계정조회 ④계(⑤+⑥+⑦)	내 수 판 매		⑦수 출 (영세율대상)
					⑤국내생산품	⑥수입상품	
제조	전장장비	01	331201	1,107,000,000	955,000,000		152,000,000
도매	전자기기	02	293002	615,060,000	615,060,000		
		03					
		04					
		05					
		06					
		07					
		08					
		09					
		10					
(111)기	타	11					
(112)합	계	99		1,722,060,000	1,570,060,000		152,000,000

(2)과세표준과 수입금액차액검토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서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검토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보기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⑧과세(일반)	⑨과세(영세율)	⑩면세수입금액	⑪합계(⑧+⑨+⑩)	⑫조정후수입금액	⑬차액(⑪-⑫)
1,312,900,000	152,000,000	272,160,000	1,737,060,000	1,722,060,000	15,000,000

(2)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부가세과표에 포함되어 있으면 +금액, 포함되지 않았으면 -금액 처리)

⑭구 분	코드	(16)금 액	비 고	⑭구 분	코드	(16)금 액	비 고
자가공급(면세전용등)	21			거래(공급)시기차이감액	30		
사업상증여(접대제공)	22			주세·개별소비세	31		
개인적공급(개인적사용)	23			매출누락	32	-12,000,000	
간주임대료	24				33		
자산 고정자산매각액	25	27,000,000	차탈		34		
매각 그밖의자산매각액(부산물)	26				35		
폐업시 잔존재고재화	27				36		
작업진행률 차이	28				37		
거래(공급)시기차이가산	29			(17)차 액 계	50	15,000,000	
				(13)차액과(17)차액계의차이금액			

①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반영된다. 즉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신고서로서 저장된 내용이 반영된다.

해당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분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경정을 포함한 다)을 기입하되, 사업연도기간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기간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합계액을 기입하고 그 차액은 (2)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란에 기입한다.

②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조정하고, 신고 되지 않았으면 (-)조정하면 되며, 2번과 3번의 차액이 일치하면 조정이 완료된 것이다.

[서식 작성방법]

1.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 (1) 업태, 종목, 기준(단순)경비율번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현재 최근에 제정된 기준(단순)경비율의 업태·종목 및 코드번호를 기입하되, 수입금액이 큰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기입하며, 수입금액의 점유비가 5%미만이거나 종목수가 11개 이상이 되는 경우는 란에 “기타”로 표시하여 합계로 기입하고 기준(단순)경비율번호란은 공란으로 한다.
- (2) 수입금액란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의 조정 후 수입금액란의 금액과 일치되어야 한다.
- (3) 수입상품란에는 국내 및 국외무역업자 등 타인으로부터 수입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수입금액이 포함된다.
- (4) 수출란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출, 국외제공용역,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생긴 수입금액을 기입한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과세(일반), 과세(영세율)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분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경정을 포함한다)을 기입하되, 사업연도기간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기간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합계액을 기입하고 그 차액은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란에 기입한다.

면세수입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입한다.

(2)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

차액에 대하여 구분란에 자가공급, 고정자산매각액, 주세·특별소비세, 자가공급, 거래시기차이 등 해당란에 분류하여 기입하되,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에 차액항목을 기입하고 관련금액을 기입한다.

수출란과 영세율란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3. 간주익금조정명세서

1. 간주익금의 계산대상법인

(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 제외)일 것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

- ①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중에는 주택임대에 공하는 자산가액을 포함(법인)
- ② 자산가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적수기준)를 초과하는 법인일 것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 증자·감자 등에 따라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자기자본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변동일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2. 간주익금의 계산방법

- (1)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0” 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적수는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left(\frac{\text{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text{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text{정기예금이자율}} \times \text{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의 및 유가증권처분의의 합계액} \right)$$

- (2) 위 산식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등의 적수” 는

당해 사업연도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의 적수를 말하며,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 보증금 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등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 (3) 간주익금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에는 기간경과 미수이자도 포함된다.

- (4)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이란

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을 포함, 재평가차액 및 토지취득가액을 제외)으로 하고 그 적수를 계산한다.

[건설비상당액적수 입력]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조정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1.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조정			
보증금적수계산 일수 수정			
①임대보증금등 적수	②건설비상당액 적수	③보증금잔액 { (①-②)/365 }	④이자율 (%)
7,320,000,000		20,000,000	4.0
		⑤(③X④) 익금상당액	⑥보증금운용 일수
		800,000	2,000,000
		⑦(⑤-⑥) 익금산입금액	
2. 임대보증금등의 적수계산			
크게보기			
⑧일 자	⑨적 요	⑩임대보증금누계	⑪일 수
		입금액	반환액
		잔액누계	⑫적 수 (⑩X⑪)
1 05 02	입금	30,000,000	
2			
	계	30,000,000	244
			7,320,000,000
3.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가. 건설비의 만분계산	⑬건설비 총액적수 ((20)의 합계)	⑭임대면적 적수 ((24)의 합계)	⑮건물면적 적수 ((28)의 합계)
	1,850,000,000		(16)건설비상당액적수 ((⑬X⑭)/⑮)
4. 임대보증금등의 운용수입금액 명세서			
(29)과 목	(30)계 정 금 액	(31)보증금운용수입금액	(32)기타수입금액
1 이자수익	3,000,000	2,000,000	1,000,000
2			
계	3,000,000	2,000,000	1,000,000

5. 중소기업기준검토표

회사등록의 중소기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이다. 여기서 중소기업으로 판정이 되면 세법상 중소기업이 갖는 혜택을 누릴수가 있다.

(1)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

①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직업기술분야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운영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②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함

③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개별재무제표상 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의 경우는 제외)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④졸업기준 이내일 것(하나만 해당되어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

(2)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①업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②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해당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연구보조요원 포함)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자기자본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④자본금

주권상장법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이며,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

⑤매출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⑥자산총액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⑦겸업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업종 판정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사업전체의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적정여부란은 요건란의 업종, 매출액·종업원수·자본금·자기자본·자산기준, 소유 경영의독립성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요건란의 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 표시를 한다.

(3)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①유예기간 적용 대상

중소기업의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초과하고,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조특영 § 2⑤)

②유예 적용 방법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③유예기간 적용 제외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

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초과하는 경우,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 조특법 시행령 § 6⑤ 소기업은 유예기간 없음

Esc 종료 F1 도움 F2 코드 F4 발표1 F5 삭제 F9 인쇄 F11 저장 F12 불러오기					
업종등 검토		자본금·매출액·종업원수등 검토		독립성등 검토	
요건			검 토 내 용		적합여부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자산기준	○아래요건 ①,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		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연평균인원) 당 회사 인원 100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300명 미만		적합
	해당업종		나. 자본금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당 회사 자본금	8.8억	
	건설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80억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전기, 가스, 금융보험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다. 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당 회사 매출액	17.1억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억 이하	
	②출입제도(다음 중 1가지 이상 해당시 중소기업 제외) -상시종업원수 1천명 미만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 -매출액 1천억원 미만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단, 유예기간내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라. 자기자본 8.8억		
			마. 자산총액 36.1억		
중소기업			적정여부	적합	
개정 전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창업, 분할, 합병의 경우는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08

과목별세무조정

과목별세무조정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퇴직연금부담금등조정명세서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접대비조정명세서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조정...
 세금과공과금명세서
 선급비용명세서
 가자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한차...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
 자산교환에따른양도차익의손...
 기부금조정명세서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
 자산의양도차익에관한명세서
 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보...
 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사...

1.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범위액 : ①·②중 적은 금액

① 총급여액 한도

$$\left[\begin{array}{c} \text{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 \text{설정자 제외)의 당해 사업연도 총급여액} \end{array} \right] \times 5/100$$

② 누적액 한도

$$\left[\begin{array}{c} \text{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 \text{퇴직급여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 \text{보험수리적 가액중 큰 금액} \times 20/100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c} \text{퇴직금} \\ \text{전환금} \\ \text{계상액} \end{array} \right]$$

☞ 1년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총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추계액 한도를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하였다.

' 10	' 11	' 12	' 13	' 14	' 15	' 16
30%	25%	20%	15%	10%	5%	0%

* 단, 기손금인정된 총당금은 총당금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한도 초과분을 익금산입하지 않음

1.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2. 퇴직금추계액명세서	
계정과목명	17. 총급여액	18.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기여액	19.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기여액	인원	금액	20. 기말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	인원
0504. 임금(제)	42	860,000,000	42	860,000,000		인원	금액
0505. 상여금(제)	42	236,000,000	42	236,000,000		63	500,000,000
0801. 급여(판)	21	330,000,000	21	330,000,000		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0803. 상여금(판)	21	210,000,000	21	210,000,000		22. 세법상 추계액 MAX(20, 21)	
합계	126	1,636,000,000	126	1,636,000,000		500,000,000	
3.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른 한도액	1.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19)의 계)	2. 설정률	3. 한도액 (① * ②)	비 고			
	1,636,000,000	5 / 100	81,800,000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도액	4. 장부상 총당금 기초잔액	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6. 기중 총당금 환입액	7. 기초 총당금 부인누계액	8. 기중 퇴직금 지급액		
	170,000,000			100,000,000	150,000,000		
	9. 차감액 (④ - ⑤ - ⑥ - ⑦ - ⑧)	10. 추계액 대비 설정액 ((22) * 20 / 100)	11. 퇴직금 전환금	2. 설정을 감소에 따른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MAX(⑨-⑩-⑪, 0))	13. 누적한도액 (⑩ - ③ + ⑪ + ⑫)		
	-80,000,000	100,000,000	15,000,000		115,000,000		
한도초과액 계 산	14. 한도액 (⑨과 ⑩중 적은 금액)	15. 회사 계상액	16. 한도초과액 ((15) - (14))				
	81,800,000	200,000,000	118,200,000				

2.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1)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과 보험수리적가액중 큰 금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부인누계액 제외)	=	퇴직연금 손금산입누적 한도액(A)
---	---	---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퇴직연금운용자산 잔액	-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에 의해 이미 손금산입한 금액(B)	=	손금산입대상 퇴직연금 (C)
---------------------------	---	------------------------------------	---	--------------------

손금산입한도액 = (A-B)와 (C)중 적은 금액

(2)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① 퇴직연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등으로 자산계상한 경우에는

결산조정에 의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무계산상(신고조정)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퇴직연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당해 퇴직연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③ 퇴직연금의 해약액을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법인이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퇴직연금을 해약하고 퇴직연금충당금을 환입하는 대신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1 나.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등의 계산					
19. 기초 퇴직연금예치금 등		20.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21. 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납입액	
80,000,000		25,000,000		40,000,000	
				95,000,000	
2 가.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계산					
13. 퇴직연금예치금 등 계 (22)		14. 기초퇴직연금충당금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15. 퇴직연금충당금등 손금부인 누계액	
95,000,000		80,000,000		25,000,000	
				55,000,000	
				40,000,000	
1.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조정					
1. 퇴직급여추계액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6. 퇴직부담금 등 손금산입 누적한도액 (① - ⑤)
2. 장부상 기말잔액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4. 당기말 부인 누계액	5. 차감액 (② - ③ - ④)	
500,000,000		340,000,000	138,200,000	201,800,000	298,200,000
7.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 (17)		8. 손금산입액 한도액 (⑤ - ⑦)	9. 손금산입 대상 부담금 등 (18)	10. 손금산입범위액 (⑧과 ⑨중 적은 금액)	11. 회사 손금 계상액
55,000,000		243,2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3.대손및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

(1)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대상채권 등의 범위

① 외상매출금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②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 대여한 금액

③기타채권

어음상의 채권·미수금과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2)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손금산입 제외채권

신용보증사업등의 채무보증을 제외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할인배서어음 등

(3)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기타 채권합계액의 1%(금융기관 등은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 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B/S상\ 매출채권 + 세무조정미수계상누락 + 당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액) \times 1/100(2/100) \text{ or } 대손실적을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

대손실적률 = 당해 사업연도 대손금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

1. 대손금조정												크 게	
22. 일지	23. 계정과목	24. 채권내역	25. 대손사유	26. 금액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손금계상액					
1	12.25 외상매출금	1. 매출채권	6. 소멸시효	500,000	27. 계	28. 지인액	29. 부인액	30. 계	31. 시인액	32. 부인액			
2	12.25 받을어음	1. 매출채권	5. 부도(6개	300,000			500,000						
3							1,000						
	계			800,000	800,000	299,000	501,000						
2. 채권잔액													크 게
16. 계정과목	17. 채권잔액의 장부금액	18. 기말현재대손금부인누계 전기	19. 당기	20. 합계 (17+18)	21. 총당금설정외채권 (할인, 배서, 특수채권)	22. 채 권 잔 액 (19-20)							
1	외상매출금	246,185,892	전기	500,000	246,685,892	246,685,892							
2	받을어음	159,505,000	당기	1,000	159,506,000	159,506,000							
3													
	계	405,690,892		501,000	406,191,892	406,191,892							
3. 대손충당금조정													크 게
손금 산입액	1. 채권잔액 (21의 금액)	2. 설정률(%)	3. 한도액 (1×2)	4. 당기계상액	5. 보충액	6. 계	7. 한도초과액 (6-3)						
조정	406,191,892	기본율	실적율	적립기준	회사계상액								
					5,000,000	5,282,652	1,220,734						
익금 산입액	8. 장부상 총당금기초잔액	9. 기중 총당금환입액	10. 누계액	11. 상계액 (27의 금액)	12. 총당금보충액 (총당금장부잔액)	13. 환입할금액 (8-9-10-11-12)	14. 회사환입액 (회사기말환입)	15. 과소환입액 (과다환입) (13-14)					
조정	1,332,652			200,000	800,000	282,652	50,000	-200,000					
4.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액의 조정													크 게
33.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인 금액	34.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 MIN(3,6)	35.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 (8-10-11)	36. 차액 MAX(0, 34-35)	37. 상계후 대손충당금환입액의 익금불산인금액 (33-36)									

5. 접대비조정명세서

(1) 1회 지출금액이 1만원 (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해외발행 신용카드를 포함한다), 현금영수증, 계산서·세금계산서 및 비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을 경조사비, 국외지역 지출액, 농어민 지출액 및 기준금액 초과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동법에 의한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와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②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매입자발행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 ③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접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

(2) 접대비 한도초과액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①, 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

$$\text{① } 1,200\text{만원(중소기업의 경우 } 1,800\text{만원)} \times \frac{\text{당해 사업연도의 월수}}{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수입금액을 일반수입금액과 기타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수입금액별·법인별 적용률]

수입 금액	일 반 수 입 금 액	기 타 수 입 금 액
100억원 이하	$\frac{20}{10,000}$	다음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상당액(2013년 10%)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frac{2\text{천만원} + 100\text{억 초과금액의 } 10}{10,000}$	
500억원 초과	$\frac{6\text{천만원} + 500\text{억 초과금액의 } 3}{10,000}$	

☒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의 70%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기타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㉓의 금액에서 ㉔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한다.

- ㉓ 당해 법인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감산을 미적용)
- ㉔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 중 일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같은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위와 같이 산출한 금액의 20% 상당액에 위의 ㉔금액을 합하여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산정한다.

(3) 문화접대비 한도액 추가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총 접대비 지출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비 한도액을

일반접대비 한도액에 추가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 Min(①, ②)

① Max [0, (문화접대비 지출액-당해 사업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 × 1%)]

② 당해 사업연도 일반접대비 한도액 × 10%

1. 접대비 입력 (출)		2. 접대비 조정 (갑)			
1. 수입금액명세					
구 분	① 일반수입금액	② 특수관계자간 거래금액	③ 합 계(①+②)		
금 액	1,531,560,000	180,000,000	1,711,560,000		
2. 접대비 해당금액					
④ 계정과목	합계	접대비(제조)	접대비(판매)	광고선전비	
⑤ 계정금액	65,500,000	13,153,520	38,346,480	14,000,000	
⑥ 접대비계상액 중 사적사용경비					
⑦ 접대비해당금액(⑤-⑥)	65,500,000	13,153,520	38,346,480	14,000,000	
⑧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⑨ 출 초과금액					
⑩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⑪ 출 지출액					
⑫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⑬ 출 지출액					
⑭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⑮ 출 지출액					
⑯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⑰ 출 지출액					
⑱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⑲ 출 지출액					
⑳ 접대비 부인액(⑧+⑨+⑩+⑪+⑫+⑬+⑭+⑮+⑯+⑰+⑱)					

[참고]접대비계정이외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접대비처리시 반드시 계정과목입력후 “불러오기”를 실행해야 자동입력이 가능합니다.

6.선급비용명세서

비용으로 처리한 계정과목 금액중에 차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선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Esc 종료 F1 도움 F2 코드 F3 조정등록 F4 계정구분등록 F5 삭제 F5(Ctrl) 전체삭제 F6 단수처리 F7 원장조회 F9 인쇄 F11 저장 F12 불러오기									
계정구분	거래내용	거래처	대상기간		지급액	선급비용	회사계상액	조정대상금액	
			시작일	종료일					
선급 보험료	보증보험료 납부	동부화재	2012-07-01	2013-06-30	33,690	16,706	16,000	706	
선급 보험료	자동차보험료기간	삼성화재	2012-03-01	2013-02-28	4,497,274	726,966	726,966		
선급 보험료	보증보험료 납부	럭키화재	2012-10-01	2013-09-30	92,400	69,110		69,110	
합 계					4,623,364	812,772	742,966	69,816	

불러오기

계정과목		계정구분등록		기간계산원칙	금액반영
코드	계정과목명	코드	구분등록명		
0821	보험료	2	선급 보험료	양편산입	지급액

TIP 계정과목코드를 입력하세요. (F2-코드도움)

코드도움(F2)

삭제(F5)

확인(TAB)

취소(ESC)

“불러오기”를 실행하여 자동으로 전표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시

- 1.계정과목: 회사가 사용한 보험료, 이자비용,임차료 중에 선택
 - 2.계정구분등록: 이자비용-미경과이자, 보험료-선급보험료, 임차료-선급임차료 선택
 - 3.기간계산원칙: 보험료만 양편산입
 - 4.금액반영: 불러올 데이터를 지급액난에 불러오고자 하면 1.지급액, 선급비용난에 불러오고자 하면 2.선급비용선택
- 대상기간: 보험료, 이자비용,임차료의 유효기간

6. 가자금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허용)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의 이자율은 해당 대여금에만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는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시행규칙 § 43②)
 -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거나, 대여법인의 대여금리가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

자금대여 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2] 당좌대출이자율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로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6.9%

(1) 자동 불러오기 세팅

회계데이터 불러오기 [가지급금류]						
	직책	성명	계정과목	적요번호 지급 회수	데이터불러오기	
1	사무이사	김택동	0134 가지급금	7 9	1. 불러오기	
2	전무이사	이상용	0134 가지급금	8 10	1. 불러오기	
3						

☒ 일자별 통합해서 불러옴(F4)
 같은일자, 같은 적요번호는 통합해서 불러옵니다.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 경기소재상대표의 134.가지급금계정의 직책, 성명이 같아야만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회계전표 불러오기(Tab)	코드조회(F2)	삭제(F5)
	직책,성명 불러오기(F3)	회수(Esc)

(2) 가지급금 적수

[illegible]

4. 차입금입력

(1) 계정과목 세팅

	계정과목
1	0256 당좌차입금
2	0260 단기차입금
3	0293 장기차입금
4	

차입금관련된 계정과목을 입력합니다.
회계자료를 불러올 때 활용합니다.

확인 (Tab) 삭제 (F5) 코드도움 (F2)
초기화 (F7) 취소 (Esc)

(2) 차입금을 불러와 이자율 입력

1.가자금금,가수금 입력		2.차입금 입력		3.인정이자계산 : (불)지		4.인정이자조정 : (갑)지		적용이자율선택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거래처명		적요	연월일	차변	대변	이자대상금액	이자율 %	이자	
1 신한은행	1	1. 전가	2012 1 1		100,000,000	100,000,000	5.00000	5,000,000	
2 태양물산(주)	2								
3 한양은행/보통									
4 조흥은행/보통									
5									
합 계					100,000,000	100,000,000		5,000,000	

차입처별 이자율
직접입력

5. 인명별가중평균차입이자 적용

1.가자금금,가수금 입력		2.차입금 입력		3.인정이자계산 : (불)지		4.인정이자조정 : (갑)지		적용이자율선택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o 이자율 선택: 1.가중평균차입이자율		연월일수(366)일													
직책	성명	대여기간		연월일	적요	5.차변	6.대변	7.잔액(5-6)	일수	가자금금적수(7X8)	10.가수금적수	11.차감적수	이자율(%)	3.인정이자(11X12)	
1	사무이사 김택동	발생연월일	회수일												
2	전무이사 이상용	1	2012 6 2	차기 이월	6 2 2.대여	50,000,000		50,000,000	213	10,650,000,000		10,650,000,000	6.13549	1,795,327	
차입금입력에서 자동계산된 이자율 (대여시점별)															

차입금입력에서
자동계산된 이자율
(대여시점별)

[참고]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는데 이자율이 미입력시 빨간색으로 표시

6. 인정이자 조정

1.가자금금,가수금 입력		2.차입금 입력		3.인정이자계산 : (불)지		4.인정이자조정 : (갑)지		적용이자율선택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1.성명	2.가자금금적수	3.가수금적수	4.차감적수(2-3)	5.인정이자	6.회사계상액	시가인정범위		9.조정액(=7) 7>=3억, 8>=5%
							7.차액(5-6)	비율(%)	
1	김택동	10,650,000,000		10,650,000,000	1,795,327	875,000	910,327	50.98937	910,327
2	이상용	10,800,000,000		10,800,000,000	1,810,472	2,400,000	-589,528		
			</						

차입약정이 있는
회사계상액 입력

5%이상 차이나는
금액만 임원별로
익금산입

7.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 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동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손금 불산입한다.

(1)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

①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동산

☞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으로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

－ 유예기간 중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부동산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제외)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 동 산

－ 서화·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

－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함.

－ 기타 위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

(2)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을 말함.

(3) 업무무관 자산 등의 가액

업무무관자산 등의 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규정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 위의 "취득가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가초과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4)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의 계산

차입금의 이자 중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업무무관자산과 가지급금등의 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함)}}{\text{총 차 입 금}}$$

지급이자나 총차입금은 업무무관 자산 등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에 업무무관 자산을 처분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는 업무무관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처분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지급이자상당액의 범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의 범위"와 동일하다.

② 업무무관자산 등의 가액 계산

업무무관 자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의 가액은 그 합계액에 보유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적수로 계산하고, 당해 사업연도 중에 보유한 업무무관자산 등 모두를 포함하여 전기이전에 취득·대여하여 이월되었거나 당기에 신규 취득·대여하였거나 사업연도 중에 양도·반제받은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은 보유기간일수에 대하여 적수 계산한다.

※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토록 하였으나, (동산 제외)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한다.

③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순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④지급이자의 범위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 금융어음 할인료 · 미지급이자 ·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 전환사채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 상업어음 할인액 · 선급이자 ·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 연지급수입에 있어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 지급보증료 · 신용보증료 등 · 금융회사 차입금 조기상환수수료

⑤총차입금의 계산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의 매일 잔액에 의한 적수로 계산하여야 하나,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이자율별로 계산한 금액을 합계하여 계산할 수 있다.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일반차입금은 물론 용도가 특정된 시설자금, 수출금융 등도 차입금에 포함되며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와 같은 이자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차입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이자로 계상한 Banker's Usance 등 연지급수입이자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한다.(영 § 72⑤)

$$\text{이자율별 차입금의 적수} = \text{이자율별 지급이자} \times \frac{365}{\text{연이자율}}$$

1.적수입력(을)		2.지급이자 손금불산입(감)		3.적수		4.차입금		5.적은 금액		6.손금불산입 지급이자	
1.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①지급 이자	②업무무관 부동산	③업무무관 부동산	④가지급금 등	⑤계(②+③+④)	⑥차입금 (=19)	⑦ ⑤와 ⑥중 적은 금액	⑧손금불산입 지급이자 (①×⑦÷⑥)				
17,800,000			21,450,000,000	21,450,000,000	101,157,142,858	21,450,000,000	3,774,424				
2.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 계산 [연이율 일수 현재: 365일]											
단수차이조정 연일수											
(9) 이자율 (%)	(10)지급이자	(11)차입금적수	(12)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수형자불분명 사채이자		(15)건설 자금 이자 국소법 14조에 따른 이자		차 감				
			(13)지급이자	(14)차입금적수	(16)지급이자	(17)차입금적수	(18)지급이자 (10-13-16)	(19)차입금적수 (11-14-17)			
1	7	14,000,000	73,000,000,000	200,000	1,042,857,142			13,800,000	71,957,142,858		
2	5	5,000,000	36,500,000,000			1,000,000	7,300,000,000	4,000,000	29,200,000,000		
3											
합계		19,000,000	109,500,000,000	200,000	1,042,857,142	1,000,000	7,300,000,000	17,800,000	101,157,142,858		

09

감가상각조정



감가상각조정

고정자산등록
미상각분감가상각비
양도자산감가상각비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양도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1. 고정자산등록

전표입력에서 간편등록을 사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툴바의 F4.일괄계산을 클릭하여 재계산을 하여 준후 다음을 입력한다.

[주요등록사항]

(1) 고정자산 계정과목

대상물건의 계정과목코드를 조회하여 입력한다.

(2) 자산코드/명

코드 6자리, 자산명은 한글은 10자, 영문은 20자 이내로 구체적인 자산 품목명을 입력한다.

(3) 취득연월일

해당자산을 취득한 년, 월, 일은 세법상 해당자산의 사용년, 월, 일을 입력하면 된다.

주의)세법은 사용일부터 감가상각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용일을 입력한다.

(4) 상각방법

1.정률법 , 2.정액법중 해당번호를 선택한다.

단, 건물, 구축물의 경우 세법상 정액법만 가능하다.

(5) 기초가액

전기말 현재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을 포함)을 입력한다. 단, 당기중의 취득한 금액은 추가 등록사항의 당기증가액에 넣어주어야 법인조정서식이 제대로 작성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경우의 재무상태표가액이 상각후의 금액이다.

(6) 전기말상각누계액

전기말 현재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입력한다.

(7) 전기말장부가액

기초가액에서 전기말 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자동계산한다.

(8) 당기중취득 및 당기증가

당기중에 취득이 있거나, 자본적지출에 대해 회사가 해당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처리시 자본적지출액을 입력한다.

(9) 당기감소(일부양도, 매각, 폐기)

일부자산의 매각, 폐기등이 있으면 그 금액을 기재한다. 자동으로 전기말상각누계액은 감소액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계산되어 감소한다.

(10) 전기말자본적지출액누계(정액법만)

전기말까지 지출된 자본적지출액을 입력한다.

(11) 당기자본적지출액(즉시 상각분)

자본적 지출액중 비용처리한 금액을 입력한다.

(12) 전기말부인누계액(정류만 상각대상에 가산)

전기말까지 세법상 부인(한도초과액)된 금액이 있으면 입력한다.

(13) 전기말의제액

전기말 현재의 의제상각누계액을 입력한다.

(14) 상각대상금액

감가상각대상인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자동계산 되어진다.

(15) 내용연수

해당자산의 내용연수를 입력하면 상각률이 자동표기 된다.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내서 회사가 선택하여 신고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16) 경비구분

고정자산의 용도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경비를 구분하며, 선택할 수 있는 번호는 판관비면 6.800번대, 제조경비에 해당하면 1.500번대(제조경비)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17) 당기의제상각비

조특법에 의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세법이 정하는 상각범위액까지는 무조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데 미계상했거나 적게 상각을 한 경우에 세법은 감가상각 한 것으로 의제하여 다음연도 이후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조정하게 된다. 그 조정금액이 의제상각비가 된다.

(18) 전기말상각누계액

전기말 상각누계액과 당기상각비의 합계액이 자동표기 된다.

(19) 당기말 장부가액

기초가액에서 당기말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자동표시 된다.

(20) 양도일자

전체자산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일자를 기재하여 다음연도에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의) 일부자산의 양도가 있으면 당기감소난에 기재한다.

(21) 폐기일자

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한 경우 입력한다.

(22) 업종

내용년수별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분이며 도움말을 이용하여 선택하여 입력한다.

[추가등록사항]

자산변동처리는 자산변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비망사항으로 보여준다.
다른 메뉴에 영향을 미치거나, 반영되지는 않는다.

2.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고정자산등록에서 불러오기를 하여 시부인한다. 조정등록은 자산별과 계정과목별 시부인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세법상 원칙은 자산 건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산종류가 많은 경우에는 계정과목별로 시부인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였다. 조정하고자 하는 것을 환경등록의 감가상각 시부인방법에서 선택하여 저장한후 조정을 한다.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가상각 시부인]

(1) 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의 처리

①시인부족액

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부족액은 적극적으로 손금에 산입되거나(강제상각)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법인은 도입이전수준(과거 3년평균)까지는 신고조정가능하다.

②상각부인액

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기 감가상각부인 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의 한도내에서 손금 추인하며, 법인의 당기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전기 상각부인 누계액을 당기에 손금 추인한다.

종료	F1	도움	F2	코드	F3	조정등록	F4	간편등록	F7	간접법	F8	기간별 계	F9	안채	F12	불러오기																																																																																																																																																																		
유형자산(정액법) 유형자산(정률법) 무형자산 <table border="1"> <thead> <tr> <th>계정</th> <th>자산코드/명</th> <th>취득년월일</th> <th>입력내용</th> <th>금액</th> <th>총계</th> </tr> </thead> <tbody> <tr> <td>020200</td> <td>000002</td> <td>2011-01-01</td> <td>업종코드/명 13 제조업</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합계표 자산구분 1. 건축물</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4)내용연수(기준, 신고)</td> <td>5</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상각 재무상태표</td> <td>(5)기말현재액 50,000,000</td> <td>50,000,000</td> </tr> <tr> <td></td> <td></td> <td></td> <td>자산가액</td> <td>(6)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td> <td>10,000,000</td> </tr> <tr> <td></td> <td></td> <td></td> <td>계산</td> <td>(7)마상각잔액(5)-(6) 40,000,000</td> <td>40,000,000</td> </tr> <tr> <td></td> <td></td> <td></td> <td>회계상</td> <td>(8)전기말누계</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의</td> <td>(9)당기상각비 10,000,000</td> <td>10,000,000</td> </tr> <tr> <td></td> <td></td> <td></td> <td>기초</td> <td>(10)당기말누계(8)+(9) 10,000,000</td> <td>10,000,000</td> </tr> <tr> <td></td> <td></td> <td></td> <td>가액</td> <td>(11)전기말누계</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지출액</td> <td>(12)당기지출액</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13)합계(11)+(12)</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14)취득가액((7)+(10)+(13))</td> <td>50,000,000</td> <td>50,000,000</td> </tr> <tr> <td></td> <td></td> <td></td> <td>(15)일반상각률, 특별상각률</td> <td>0.2</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상각범위</td> <td>(16)일반상각액 10,000,000</td> <td>10,000,000</td> </tr> <tr> <td></td> <td></td> <td></td> <td>액계산</td> <td>(17)특별상각액</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18)계((16)+(17)) 10,000,000</td> <td>10,000,000</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19) 당기상각시인범위액 10,000,000</td> <td>10,000,000</td> </tr> <tr> <td></td> <td></td> <td></td> <td>(20)회계상상각액((9)+(12))</td> <td>10,000,000</td> <td>10,000,000</td> </tr> <tr> <td></td> <td></td> <td></td> <td>(21)차감액((20)-(19))</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22)최저한세적용에따른특별상각부인액</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23) 상각부인액((21)+(22))</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조정액</td> <td>(24) 기왕부인액중당기손금추인액</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부인액</td> <td>(25) 전기말부인누계액</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누계</td> <td>(26) 당기말부인누계액 (25)+(23)-(24)</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당기말</td> <td>(27) 당기의제상각액 Δ(21) -(24) </td> <td></td> </tr> </tbody> </table>																	계정	자산코드/명	취득년월일	입력내용	금액	총계	020200	000002	2011-01-01	업종코드/명 13 제조업						합계표 자산구분 1. 건축물						(4)내용연수(기준, 신고)	5					상각 재무상태표	(5)기말현재액 50,000,000	50,000,000				자산가액	(6)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10,000,000				계산	(7)마상각잔액(5)-(6) 40,000,000	40,000,000				회계상	(8)전기말누계					의	(9)당기상각비 10,000,000	10,000,000				기초	(10)당기말누계(8)+(9) 10,000,000	10,000,000				가액	(11)전기말누계					지출액	(12)당기지출액						(13)합계(11)+(12)					(14)취득가액((7)+(10)+(13))	50,000,000	50,000,000				(15)일반상각률, 특별상각률	0.2					상각범위	(16)일반상각액 10,000,000	10,000,000				액계산	(17)특별상각액						(18)계((16)+(17)) 10,000,000	10,000,000					(19) 당기상각시인범위액 10,000,000	10,000,000				(20)회계상상각액((9)+(12))	10,000,000	10,000,000				(21)차감액((20)-(19))						(22)최저한세적용에따른특별상각부인액						(23) 상각부인액((21)+(22))						조정액	(24) 기왕부인액중당기손금추인액					부인액	(25) 전기말부인누계액					누계	(26) 당기말부인누계액 (25)+(23)-(24)					당기말	(27) 당기의제상각액 Δ(21) -(24)	
계정	자산코드/명	취득년월일	입력내용	금액	총계																																																																																																																																																																													
020200	000002	2011-01-01	업종코드/명 13 제조업																																																																																																																																																																															
			합계표 자산구분 1. 건축물																																																																																																																																																																															
			(4)내용연수(기준, 신고)	5																																																																																																																																																																														
			상각 재무상태표	(5)기말현재액 50,000,000	50,000,000																																																																																																																																																																													
			자산가액	(6)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10,000,000																																																																																																																																																																													
			계산	(7)마상각잔액(5)-(6) 40,000,000	40,000,000																																																																																																																																																																													
			회계상	(8)전기말누계																																																																																																																																																																														
			의	(9)당기상각비 10,000,000	10,000,000																																																																																																																																																																													
			기초	(10)당기말누계(8)+(9) 10,000,000	10,000,000																																																																																																																																																																													
			가액	(11)전기말누계																																																																																																																																																																														
			지출액	(12)당기지출액																																																																																																																																																																														
				(13)합계(11)+(12)																																																																																																																																																																														
			(14)취득가액((7)+(10)+(13))	50,000,000	50,000,000																																																																																																																																																																													
			(15)일반상각률, 특별상각률	0.2																																																																																																																																																																														
			상각범위	(16)일반상각액 10,000,000	10,000,000																																																																																																																																																																													
			액계산	(17)특별상각액																																																																																																																																																																														
				(18)계((16)+(17)) 10,000,000	10,000,000																																																																																																																																																																													
				(19) 당기상각시인범위액 10,000,000	10,000,000																																																																																																																																																																													
			(20)회계상상각액((9)+(12))	10,000,000	10,000,000																																																																																																																																																																													
			(21)차감액((20)-(19))																																																																																																																																																																															
			(22)최저한세적용에따른특별상각부인액																																																																																																																																																																															
			(23) 상각부인액((21)+(22))																																																																																																																																																																															
			조정액	(24) 기왕부인액중당기손금추인액																																																																																																																																																																														
			부인액	(25) 전기말부인누계액																																																																																																																																																																														
			누계	(26) 당기말부인누계액 (25)+(23)-(24)																																																																																																																																																																														
			당기말	(27) 당기의제상각액 Δ(21) -(24)																																																																																																																																																																														
계정			계정과목명 : 건물																																																																																																																																																																															

(2) 사업연도 중 취득·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

①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자산

사용월수에 따라 월할 상각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text{감가상각범위액} = \text{연상각범위액} \times \text{사용월수} \div 12$$

②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 : 감가상각비 계상 의무 없음.

(3) 사업연도 변경, 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감가상각 범위액

$$\cdot (\text{상각범위액} \times \text{당해 사업연도 월수}) \div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인 일수는 1월로 한다

(4)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 시부인액 등의 처리

①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의 계산

$$\frac{\text{당해자산 전체의 상각부인액 등}}{\text{양도부분의 가액}} \times \frac{\text{당해 감가상각 자산의 전체 가액}}{\text{양도부분의 가액}}$$

[주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5) 평가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감가상각과 평가증(보험업법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추인하며, 평가증 한도를 초과하는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②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 시인부족액은 소멸된다. (평가증 전액을 익금산입)

(6)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 배부하여야 한다.

[감가상각의 의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 받은 경우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1)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아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주의]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감가상각의제액을 고정자산처분손익계산시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정자산 처분손익계산시 취득원가는 회사 장부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다.

[즉시상각의 의제]

(1)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손금계상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2) 다음의 자산을 제외한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②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
|--|

(3) 다음의 수선비 지출액을 사업에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미상각잔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③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

(4) 다음의 자산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 ② 영화필름, 공구(금형 포함),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구,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간판 ③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④ 전화기(휴대전화기 포함), 개인용컴퓨터(주변기기 포함) |
|---|

(5)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6)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인정한다.

10

소득및과표계산



소득및과표계산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
비과세소득명세서
소득자료명세서
소득구분계산서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출연금등의익금불산입명세서
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보...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

소득금액조정에 대한 방법을 조정과목사용, 직접등록중에 선택하여 조정한다.

(1)각 조정명세서에 의한 조정계산결과 익금 및 손금 조정사항과 기타 익금 및 손금조정 사항을 적어 집계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조정사항의 명세 또는 계산 근거를 첨부한다. 다만, 기부금 한도초과액 조정분은 본 표에서 제외하고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차감전 손손익과의 차액인 법인세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과목란은 간단 명료하게 회사계산 계정과목 및 익금, 손금산입 유형을 요약 하여 기재한다.

(3)처분란은 익금의 경우 배당, 상여, 유보,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 기타로 구분하여 적고, 손금의 경우 유보,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경우 상여 100, 배당 200, 기타 소득 300, 유보 400, 기타 ,사외유출 500, 기타 600으로 적으며,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경우 유보(△유보) 100, 기타 200으로 기재한다. 동업기업으로부터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처분란에 ‘기타’ 로 기재한다.

(4)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합계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각각 옮겨 기재한다.

(5)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로 환산함에 따른 세무조정내용을 제자산, 제부채 등의 항목으로 우선 작성한 후 기타 세무조정내용을 기재한다.

(6)소득명세(조정내용)란에는 세무조정금액 및 소득처분 등 세무조정내용을 간략히 적는다.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법인세등	2,000,000	기타사외유출	미수이자	900,000	유보발생
임원상여금한도초과	1,200,000	상여	법인세환급가산금	700,000	기타
토지분 취득, 등복세	3,400,000	유보발생	기왕부인감가비손금산입	1,200,000	유보감소
			전기선급비용(보월료)과소계상	300,000	유보감소
합 계	6,600,000		합 계	3,100,000	

소득명세 2 전기선급비용 과소계상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2. 소득구분계산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감면(감면율이 다른 경우 포함) 및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공제 등에 있어서 구분 손익계산이 필요한 법인은 이 표를 작성한다.

(1) 표준손익계산서구분경리

표준손익계산서를 작성한후 불러오기하여 내용을 반영한다. 그런다음에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합계란에 입력후 다시 감면분과 기타분으로 구분하여 입력하고, 판관비,영업외손익,이월결손금,비과세, 소득공제등을 구분하여 입력한다. 이경우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금액이 반영되기전의 순수한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표준손익계산서구분경리 2.세무조정소득구분 3.공통손익의 안분기준 4.표준손익/세무조정 구분명세조회 5.소득구분계산서									
①과목	표준손익계산서	②구분	③합계	감면분 또는 합병 승계사업해당분 등				기타분	
				④금액	⑤비율	④금액	⑤비율	⑥금액	⑦비율
(1)매출액	1,710,060,000		1,710,060,000	250,000,000	14.61			1,460,060,000	85.39
(2)매출원가	1,081,881,834		1,081,881,834	120,000,000	11.09			961,881,834	88.91
(3)매출총손익 {(1)-(2)}	628,178,166		628,178,166						
(4)판매비와 관리비	298,607,944	개별분	298,607,944						
		공통분	298,607,944						
(5)영업손익 {(3)-(4)}	329,570,222		329,570,222						
(6)영업외 수익	29,242,256	개별분	12,000,000	3,200,000	26.66			8,800,000	73.34
		공통분	17,242,256						
(7)영업외 비용	41,384,800	개별분	41,384,800						
		공통분	41,384,800						
(8)각 사업년도 소득 {(5)+(6)-(7)}	317,427,678		317,427,678						
(9)이월결손금			10,000,000					10,000,000	100.00
(10)비과세 소득 (11)소득공제액									
(12)과세표준 {(8)-(9)-(10)-(11)}	317,427,678		307,427,678						

전 자 불러오기[F12]키를 클릭하면 표준손익계산서와 함께[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불러 옵니다.

감면분 또는 합병승계사업 해당분란 아래 공간에는 구분해야 할 사업장·사업·감면율 등을 기재하며, 주의할 것은 각사업년도소득이 표준손익계산서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표시한다.

(2)세무조정소득구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세무조정사항을 불러와 표준손익계산서 항목에 반영하여 정확한 세무상 금액으로 조정하는 절차이다. 주의할 것은 세무조정상의 성격이 매출액인지, 판관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정하고, 이렇게 조정후 조정한 항목이 감면과 기타의 공통분인지, 아니면 감면에서만 발생한것인지를 선택하여 반영한다.

1.표준손익계산서구분경리						2.세무조정소득구분		3.공통손익의 안분기준		4.표준손익/세무조정 구분명세조회		5.소득구분계산서	
과목추가													
2.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과목명	금액	과목선택	구분선택	감면선택	종류							
1	대손금부인	2,000,000	판매비와	공통분	해당없음		소득처분 상여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소득내용 과목선택 1:매출액, 2:매출원가, 3:판매비와관리비, 4:영업외수익, 5:영업외비용, 6:해당없음 구분선택 1:개별분, 2:공통분, 3:해당없음 감면선택 1:감면분1, 2:감면분2, 3:감면분3, 4:기타분, 5:해당없음						
2	대손금부인	1,000	판매비와	공통분	해당없음								
3	대손충당금한도초과	2,679,990	판매비와	공통분	해당없음								
4	퇴직연금등지급	15,000,000	판매비와	공통분	해당없음								
5	접대비한도초과	37,051,548	판매비와	공통분	해당없음								
6	신용카드등미사용액	5,199,820	판매비와	공통분	해당없음								
7	가지급금인정이자(대포)	5,838,000	영업외수	개별분	감면분1								
8	가지급금인정이자(기타)	929,424	영업외수	개별분	감면분1								
9	재고자산평가감	433,000	매출원가	공통분	해당없음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명	금액	과목선택	구분선택	감면선택	종류							
1	매출과대계상	30,000,000	매출액	공통분	해당없음		소득처분 유보발생 소득내용 과목선택 1:매출액, 2:매출원가, 3:판매비와관리비, 4:영업외수익, 5:영업외비용, 6:해당없음 구분선택 1:개별분, 2:공통분, 3:해당없음 감면선택 1:감면분1, 2:감면분2, 3:감면분3, 4:기타분, 5:해당없음						
2	전기대손충당금한도초	3,000,000	판매비와	공통분	해당없음								
3	퇴직연금등손금산입	25,000,000	판매비와	공통분	해당없음								
4	퇴직급여충당부채	15,000,000	판매비와	공통분	해당없음								
전자 불러오기[F12]키를 클릭하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세무조정사항을 불러 옵니다.													

[참고]소득금액합계표상에 없는 기부금 같은 조사항목은 “과목추가 “후 조정한다.

(3)공통손익의 안분기준

세무조정소득구분에서 공통의 체크한 사항을 세법상 안분기준에 의해 감면과 기타분으로 나눠주는 난이다.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공통손금은 동일업종의 경우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1.표준손익계산서구분경리
2.세무조정소득구분
3.공통손익의 안분기준
4.표준손익/세무조정 구분명세조회
5.소득구분계산서

1. 안분기준

과목	안분기준	
1.판매비와 관리비 공통분	2 1:매출액비례	2:개별손금비례
2.영업외 수익 공통분	1 1:매출액비례	2:개별손금비례
3.영업외 비용 공통분	2 1:매출액비례	2:개별손금비례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공통손금은 업종이 동일한 경우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법령 제 156, 법칙 제75 ②, 법칙 제 76 ⑤)

2. 기준금액

사용자편집

과목	합계	감면분 또는 합병 승계사업자 해당분 등				기타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매출액	1,680,060,000	250,000,000	14.88			1,430,060,000	85.12
개별손금	1,081,881,834	120,000,000	11.09			961,881,834	88.91

전 자

1. 표준손익계산서 소득구분경리 탭과 2. 세무조정소득구분 탭을 작성하면 기준금액이 자동집계 됩니다.
사용자 편집으로 기준금액을 수정한 경우에는 재계산(F6) 키를 클릭하면 편집된 금액이 삭제 되고 자동 재계산 됩니다.

(4)표준손익/세무조정구분명세조회

앞에서 조정한대로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조회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메뉴이다.

1.표준손익계산서구분경리
2.세무조정소득구분
3.공통손익의 안분기준
4.표준손익/세무조정 구분명세조회
5.소득구분계산서

①과목	구분	②구분	③합계	감면분 또는 합병 승계사업해당분 등				기타분	
				④금액	⑤비율	④금액	⑤비율	④금액	⑤비율
(1)매출액	표준손익계산서		1,710,060,000	250,000,000	14.61			1,460,060,000	85.39
		세무조정	-30,000,000				-30,000,000	100.00	
		계	1,680,060,000	250,000,000			1,430,060,000		
(2)매출원가	표준손익계산서		1,081,881,834	120,000,000	11.09			961,881,834	88.91
		세무조정	-433,000	-48,019	11.08		-384,981	88.92	
		계	1,081,448,834	119,951,981			961,496,853		
(3)매출총손익 {(1)-(2)}	표준손익계산서		628,178,166						
		세무조정	-29,567,000						
		계	598,611,166						
(4)판매비와 관리비	표준손익계산서	개별분							
		공통분	298,607,944	33,115,621	11.09		265,492,323	88.91	
		계	298,607,944	33,115,621			265,492,323		
	세무조정	개별분							
		공통분	-18,932,358	-2,099,599	11.09		-16,832,759	88.91	
		계	-18,932,358	-2,099,599			-16,832,759		
(5)영업손익 {(3)-(4)}	표준손익계산서		329,570,222						
		세무조정	-10,634,642						
		계	318,935,580						
(6)영업외 수익	표준손익계산서	개별분	12,000,000	3,200,000			8,800,000		
		공통분	17,242,256	2,565,648	14.88		14,676,608	85.12	
		계	29,242,256	5,765,648			23,476,608		
	세무조정	개별분	6,767,424	6,767,424					
		공통분							
		계							

전 자

(5)소득구분계산서

최종적으로 확인후에 인쇄하는 메뉴이며 이서식의 과표금액이 세액조정계산서의 과표 금액과 불일치하면 합계의 과세표준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편집이 가능하다.

1. 표준손익계산서구분경리 2. 세무조정소득구분 3. 공통손익의 안분기준 4. 표준손익/세무조정 구분명세조회 5. 소득구분계산서											
①과목	②구분	③합계	감면분 또는 합병 승계사업해당분 등						기타분		비고
			④금액	⑤비율	④금액	⑤비율	④금액	⑤비율	⑥금액	⑦비율	
(1)매출액		1,680,060,000	250,000,000	14.88					1,430,060,000	85.12	
(2)매출원가		1,081,448,834	119,951,981	11.09					961,496,853	88.91	
(3)매출손익 {(1)-(2)}		598,611,166	130,048,019						468,563,147		
(4)판매비와 관리비	개발분										
	공통분	276,599,122	30,674,842	11.08					245,924,280	88.92	개발손금
	계	276,599,122	30,674,842						245,924,280		
(5)영업손익 {(3)-(4)}		322,012,044	99,373,177						222,638,867		
(6)영업외 수익	개발분	18,767,424	9,967,424	53.11					8,800,000	46.89	
	공통분	20,242,256	3,012,048	14.88					17,230,208	85.12	매출액
	계	39,009,680	12,979,472						26,030,208		
(7)영업외 비용	개발분										
	공통분	-56,971,364	-6,318,124	11.08					-50,653,240	88.92	개발손금
	계	-56,971,364	-6,318,124						-50,653,240		
(8)각 사업년도 소득 {(5)+(6)-(7)}		417,993,088	118,670,773						299,322,315		
(9)이월결손금		10,000,000							10,000,000	100.00	
(10)비과세 소득											
(11)소득공제액											
(12)과세 표준 {(8)-(9)-(10)-(11)}		407,993,088	118,670,773						289,322,315		

전 자

(12) 과세 표준 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112. 과세 표준금액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붉은색으로 반영 됩니다.

비고란에는 배분기준, 계산근거 등을 적습니다. 다만, 필요시에는 구체적인 계산명세서를 첨부한다.

3. 전산조작운영명세서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 24. 장부전산화여부에 체크하게 되고, 여기에서 체크된 법인은 당 서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Esc	종료	F1	도움	F5	전체식체	F8	기본값 설정	F9	인쇄	F11	저장
1. 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 4											
☐ ① 자체개발 ☐ ② 외주개발 ☐ ③ ERP ☒ ④ 상업용 회계프로그램											
2. OS(운영체제) 5											
☐ ① Unix 계열 ☐ ② 서버급 Windows ☐ ③ IBM OS 계열 ☐ ④ PC용 Windows ☒ ⑤ 세무대리인이 대리 ☐ ⑥ 기타											
3. 프로그램 언어(1번 ①② 응답자만)											
☐ ① C++ ☐ ② Delphi ☐ ③ COBOL ☐ ④ Power Builder ☐ ⑤ Visual Basic ☐ ⑥ Visual C++ ☐ ⑦ C# ☐ ⑧ 기타											
4. DBMS(1번 ①②③ 응답자만)											
☐ ① Oracle ☐ ② AS/400 ☐ ③ IBM DB2 ☐ ④ MS SQL Server ☐ ⑤ My SQL ☐ ⑥ Sybase ☐ ⑦ Informix ☐ ⑧ 기타											
4-1. DBMS Version											
5. ERP(1번 ③ 응답자만)											
☐ ① SAP ☐ ② Oracle ☐ ③ Uni-ERP ☐ ④ 자체개발 ☐ ⑤ 기타											
6. 상업용 회계프로그램(1번 ④ 응답자만) 5											
☐ ① 더존 NEOplus ☐ ② 키크 SA-Win ☐ ③ 아이캐스트 얼마에요 ☐ ④ 서울마이크로시스템 Micro Win ☒ ⑤ 기타											
리버스알파											
7. 수입금액관리 프로그램											
제 조 회사1 S/명칭1											
제 조 회사2 S/명칭2											
제 조 회사3 S/명칭3											
전 자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한 회사코드에서 반드시 본 메뉴를 입력하세요. 그외의 회사코드에서 입력하시면 전자신고에 수록이 안됩니다.											

11 세액계산및신고서



세액계산및신고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
가산세액계산서
선박표준이익산출명세서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납부서
지방소득세(법인세분)신고서

1.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1)과세표준의 계산

$$\boxed{\text{각사업연도소득}} - \begin{array}{|l|} \hline \text{① 이월결손금} \\ \text{② 비과세소득} \\ \text{③ 소득공제액} \\ \hline \end{array} = \boxed{\text{과세표준}}$$

☒ ① · ② · ③의 순서로 공제액을 계산한다.

(2)이월결손금

- ①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 한다.
- ② 과세표준 계산 시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계산상결손금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단, 2009년 이전분은 5년 이내 결손금)

(3)분납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 50% 이하의 금액

①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계 산	101.결산서상 당기순손익	01	260,977,678	④ 납 부 할 기 한 내 납 세 액 계 산	120.산출세액 (120=119)		12,667,979
	소득금액조정	102.익금산입	86,060,000		121.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	17	3,800,094
	금액	103.손금산입	42,270,000		122.차감세액	18	8,867,885
	104.차가감소득금액 (101+102-103)	04	304,767,678		123.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세액	19	
	105.기부금 한도초과액	05	1,912,117		124.가산세액	20	
	106.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54	8,000,000		125.가감계 (122-123+124)	21	8,867,885
	107.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4+105-106)	06	298,679,795		126.중간예납세액	22	
② 과 세 표 준 계 산	108.각사업연도 소득금액 (108=107)		298,679,795	⑤ 세 액 계 산	127.수시부과세액	23	
	109.이월결손금	07	172,000,000		128.원천납부세액	24	
	110.비과세소득	08			129.간접회사등 외국 납부세액	25	
	111.소득공제	09			130.소계 (126+127+128+129)	26	
	112.과세표준 (108-109-110-111)	10	126,679,795		131.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113.선박표준이익	55			132.합계 (130+131)	28	
					133.감면분 추가 납부세액	29	
③ 산 출 세 액 계 산	114.과세표준 (113=112+113)	56	126,679,795	⑥ 세 액 계 산	134.차가감 납부할 세액 (125-132+133)	30	8,867,885
	115.세율	11	10%		⑤토지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TAB로 이동)		
	116.지점유보소득 (법 제96조)	13			151.차가감 납부할 세액 계 (134+150)	46	8,867,885
	117.세율	14			15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결정세액공제	57	
	118.산출세액	15	12,667,979		153.분납세액 계산 범위액 (151-124-133-145-152+131)	47	
	119.합계 (115+118)	16	12,667,979		154.현금납부	48	
					155.물납	49	
⑦ 납 부 세 액 계 산				⑧ 납 부 세 액 계 산	156.계 (154+155)	50	
					157.현금납부	51	8,867,885
					158.물납	52	
					160.계 (157+158) [160-(151-152-156)]	53	8,867,885

2.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세제의 중립성·국민개념·재정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최저한세 제도이다.

1. 적용대상 법인

(1) 내국법인

법인세법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되,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

(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등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

2. 적용범위=max[1), 2)]

최저한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가산세·각종 준비금·익금·산입 또는 감면세액 추정시의 이자상당가산액 및 감면세액의 추정세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각종 감면 후의 세액

각종 감면 후의 세액이란 다음 각호의 특별비용(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 소득공제, 익금불산입, 비과세, 세액공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말한다.

(2)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예제]

1.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와 공제감면, 세액합계표를 작성하시오
2. 최저한세조정계산서를 통하여 최저한세 적용여부를 검토하시오.
3. 당해연도에 이월되는 세액공제금액은 없으며, 결산상 당기순이익은 260,977,678원, 익금산입 86,050,000원, 손금산입 42,270,000원, 이월결손금 202,000,000원으로 가정한다. 기부금한도초과 1,912,117원, 기부금이월손금산입 8,000,000원, 이월결손금 202,000,000원이라 가정한다.
4.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 당기중의 취득액은 200,000,000원이다.
(법인세세율이 2%이하 10%, 최저한세율 7%로 가정한다)

1.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작성

1. 세액공제(1)		2. 세액공제(2)		3. 당기공제 및 미철액계산			
구분	계산기준	계산명세		공제대상 세액			
		투자액	공제율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 3/100	200,000,000	3	6,000,000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환어음 등 지급금액-막속어음결제금액) × ((4,5)/1000, 15/10000) *산출세액의 10% 한도	F4-계산내역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자금출연 세액공제	출연금 × 7/100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발생액 × (10,15,20,25,30)/100 또는 4년간 연평균 초과액 × 50(40)/100]	F4-계산내역					
연구·인력개발비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 10/100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허권등취득금액 × 7/100 *법인세의 10% 한도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 7(3)/100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 3/100						
에너지절감시설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 10/100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 10/100						
의약품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 7/100						

2. 세액공제조정 당기공제세액및 이월액계산

[illegible]

3. 공제감면합계표 작성

최저한세액계산표		최저한세액계산표		최저한세액계산표		최저한세액계산표		비과세, 이월과세 추가납부액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세 액 계 산 표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전기이월액	④당기발생액	⑤공제세액			
									6,000,000	6,000,000			
	(17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5조			31						
	(17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7조의2			75						
	(17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특법」 제8조의3			4M						
	(174)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특법」 제10조			32						
	(175)연구·인력개발비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11조			34						
	(176)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조제2항			76						
	(177)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35						
	(178)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36						
	(179)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2			77						
	(180)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3			4A						
	(181)의약품 품질관리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4			4B						
	(182)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6조			37						
	(183)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6조			4N						
	(184)공급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2			4H						
	(185)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4			91						
	(186)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조특법」 제30조의4			40						
	(186)근로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94조			42						
	(187)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특법」 제104조의8 제1항			84						
(18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특법」 제104조의8 제3항			4J							
(189)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14			4E							
(190)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15			4F							
(191)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18 제1항			4I							
(192)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18 제2항			4K							
(193)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22			40							

4. 법인세 과세표준및 세액조정계산서 작성

Excl	종목	F2 코드	F5 삭제	F7 원감조치	F8 잔액조치	F9 인쇄	F11 저장	F12 불러오기
①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101.결산서상 당기순손익	01		260,977,678			
		소득금액조정	102.익금산입	02	86,060,000			
		금액	103.손금산입	03	42,270,000			
		104.차가감 소득금액 (101+102-103)	04		304,757,678			
		105.기부금 한도초과액	05		1,912,117			
		106.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54		8,000,000			
		107.사업연도소득금액 (104+105-106)	06		298,669,795			
②	과세표준계산	108.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08+107)			298,669,795			
		109.이월결손금	07		172,000,000			
		110.비과세소득	08					
		111.소득공제	09					
		112.과세표준 (108-109-110-111)	10		126,669,795			
		159.선박표준이익	55					
③	산출세액계산	113.과세표준 (113+112+159)	56		126,669,795			
		114.세율	11		10%			
		115.산출세액	12		12,666,979			
		116.지급유보소득 (법 제96조)	13					
		117.세율	14					
		118.산출세액	15					
		119.합계 (115+118)	16		12,666,979			
④	납부세액	120.산출세액 (120+119)						12,666,979
		121.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 감면 세액	17					5,000,000
		122.차감세액	18					6,666,979
		123.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 세액	19					
		124.가산세액	20					
		125.가감계 (122-123+124)	21					6,666,979
		126.중간예납세액	22					
		127.수시부과세액	23					
		128.월천납부세액	24					
		129.간접회사등 외국납부세액	25					
		130.소계 (126+127+128+129)	26					
		131.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132.합계 (130+131)	28					
		133.감면분 추가납부세액	29					
		134.차가감납부할 세액 (125-132+133)	30					6,666,979
		⑤토지등알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T48로 이동)						
		151.차가감납부할 세액계 (134+150)	46					6,666,979
		15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결정세액공제	57					
		153.분납세액계산범위액 (151-124-133-145-152+131)	47					
		154.현금납부	48					
		155.월납	49					
		156.계 (154+155)	50					
		157.현금납부	51					6,666,979
		158.월납	52					
		160.계 (157+158)	53					6,666,979
		160-[(151-132-136)]						

5. 최저한세 조정

Esc	종로	F1	도움	F3	조정등록	F4	조정합산서	F5	합계	F6	중소기업유예연차	F7	원장조회	F8	잔액조회	F9	인쇄	F11	저장	F12	불러오기	
①구분										23	②감면후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합			⑤조정후세액		
(101) 결산서상달기		순이익								01	260,977,678											
소득조정금액		(102)의금산입								02	86,060,000											
		(103)손금산입								03	42,270,000											
(104) 조정후소득		금액 (101+102-103)								04	304,767,678			304,767,678						304,767,678		
최저한세적용대상 특별비용		(105)준비금								05												
		(106)특별상각,특례상각								06												
(107) 특별비용중금산입전소득금액 (104+105+106)										07	304,767,678			304,767,678						304,767,678		
(108) 기부금한도초과액										08	1,912,117			1,912,117						1,912,117		
(109)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09	8,000,000			8,000,000						8,000,000		
(110) 각사업년도소득금액 (107+108-109)										10	298,679,795			298,679,795						298,679,795		
(111) 이월결손금		순이익								11	172,000,000			172,000,000						172,000,000		
(112) 비과세소득										12												
(113) 최저한세적용대상비과세소득										13												
(114) 최저한세적용대상이익불산입										14												
										15	126,679,795			126,679,795						126,679,795		
(116) 소득공제										16												
(117) 최저한세적용대상소득공제										17												
(118) 과세표준금액 (115-116+117)										18	126,679,795			126,679,795						126,679,795		
(119) 선박표준준이익										24												
(120) 과세표준금액 (118+119)										25	126,679,795			126,679,795						126,679,795		
(121) 세율										19	10 %			7 %						10 %		
(122) 산출세액										20	12,667,979			8,867,585						12,667,979		
(123) 감면세액										21												
(124) 세액공제										22	6,000,000									3,800,394		
(125) 차감세액 (122-123-124)										23	6,667,979						2,199,606			8,867,585		

7. 공제감면 합계표 재작성

최저한세배제세액감면 최저한세배제세액공제 최저한세적용세액감면 최저한세적용세액공제, 면제 비과세, 미필과세 추가납부액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구분	세액공제	세액감면	코드	⑤전기이월액	⑥당기발생액	⑦공제세액
(17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5조	31			6,000,000	3,800,394
(172)기업의 으뜸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7조의2	75				
(17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특법」 제8조의3	4M				
(174)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특법」 제10조	32				
(175)연구·인력개발비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11조	34				
(176)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조제2항	76				
(177)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36				
(178)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36				
(179)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2	77				
(180)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3	4A				
(181)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4	4B				
(182)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6조	37				
(183)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6조	4N				
(184)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2	4H				
(185)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4	91				
(186)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조특법」 제30조의4	4Q				
(186)근로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94조	42				
(187)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특법」 제104조의8 제1항	94				
(18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특법」 제104조의8 제3항	4J				
(189)제3자 클류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14	4E				
(190)해외자원개발사업자선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15	4F				
(191)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18 제1항	4I				
(192)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18 제2항	4K				
(193)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22	4O				

8. 최저한세 고려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①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계 산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260,977,679	④ 납 부 세 액 계 산	120. 산출세액 (120-119)		12,667,979		
	소득금액조정금	102. 이익금산입	02		86,060,000	121.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 감면세액	17	3,800,094	
			103. 손금산입		03	42,270,000	122. 차감세액	18	8,867,885
		104. 차가감소득금액 (101+102-103)	04		304,767,679	123.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세액	19		
		105. 기부금 한도초과액	05		1,912,117	124. 가산세액	20		
		106.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54		8,000,000	125. 가감계 (122-123+124)	21	8,867,885	
		107.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4+105-106)	06		298,679,795				
② 과 세 표 준 계 산	108.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 (108+107)		298,679,795	세 액 계 산	126. 중간예납세액	22			
	109. 이월결손금	07	172,000,000		127. 수시부과세액	23			
	110. 비과세소득	08			128. 원천납부세액	24			
	111. 소득공제	09			129. 간접회사등 외국납부세액	25			
	112. 과세표준 (108-109-110-111)	10	126,679,795		130. 소계 (126+127+128+129)	26			
	159. 선박표준이익	55			131.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132. 합계 (130+131)	28			
③ 산 출 세 액 계 산	113. 과세표준 (113+112+159)	56	126,679,795	산 출 세 액 계 산	133.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29			
	114. 세율	11	10%		134. 차가감납부할세액 (125-132+133)	30	8,867,885		
	115. 산출세액	12	12,667,979		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16. 지적요부소득 (법 제96조)	13			151. 차가감납부할세액계 (134+150)	46	8,867,885		
	117. 세율	14			15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결정세액공제	57			
	118. 산출세액	15			153. 분납세액계산범위액 (151-124-133-145-152+131)	47			
	119. 합계 (115+118)	16	12,667,979		154. 현금납부	48			
				155. 물납	49				
				156. 계 (154+155)	50				
				157. 현금납부	51	8,867,885			
				158. 물납	52				
				160. 계 (157+158) [160=(151-152-156)]	53	8,867,885			

3.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위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사업자등록번호		④법인등록번호	
②법인명		⑤전화번호	
③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주소	
⑦소재지			
⑧사업지		⑩종목	
⑨사업연도		⑪수시부과기간	
⑫법인구분		⑬조정구분	
1. 내국 2. 외국 3. 외부(비율 %)		1. 외부 2. 자기	
⑭종류별구분		⑮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기업 그외기업		1. 예 2. 부	
⑯리인		⑰신고구분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기타법인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3. 기한후 신고 4. 중도폐업신고 5. 경정청구	
비영리법인		⑱결산확정일	
⑲법인유형별구분		⑳납부일	
㉑신고일		㉒연장기한	
㉓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구분		구분	
㉔주식변동		㉕장부전산화	
㉖사업연도의제		㉗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㉘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㉙지고자산동평가방법신고서 제출	
㉚기능화 처리 재무제표 작성		㉛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㉜통업기업의 출자자(통업자)		㉝국제회계기준(K-IFRS)적용	
㉞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㉟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	
㊱기능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법인세법」 제58조의2제1항)			
구분		법인세	
		토지, 특장토소득에 대한 법인세	
㊲수입금의		계	
㊳과세표준			
㊴산출세액			
㊵충부담세액			
㊶기납부세액			
㊷자감납부세액			
㊸분납할세액			
㊹자감납부세액			
㊺조정번호		㊻조정자	
㊼조정관리번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은행 (본)지점	
㊽예입처		㊾예금종류	
㊿계좌번호		예금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인)

(인)

신고인(대표자)

(서명)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의 기본사항을 체크한후 상단의 마감(F3)을 클릭하여 마감한다.

법인 마감
✕

☒	서식코드	서식명
☒	A100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A10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A111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	A112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_자산)
☒	A113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_부채자본)
☒	A115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
☒	A134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A172	합계표준대차대조표
☒	A243	가지금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	A244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
☒	A278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작성서식 11건 / 마감대상서식 11 건		

[신고데이터 적정성 안내]

최종데이터의 적정성은 당해 회사의 담당자 및 세무대리인이 검토하여야 하며, 본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데이터는 완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주의사항]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전자신고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메뉴에서 신고방법을 **0:전자신고**로 입력 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23)주식변동에 1:여**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주식변동이 없더라도 신고서 **(23)주식변동여부를 1(여)**로 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자체마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산매체로 제출할 경우에만 마감하세요)>

마감[F3]

취소[ESC]

[마감시 화면]

12 조특법상의 공제와 감면



[세액공제 규정]

구 분	공 제 금 내 역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 3%(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이용 30일내 결제금액-약속어음결제액) × 0.5%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이용 31~60일내 결제금액-약속어음결제액) × 0.15% * 세액공제 한도 : 법인세의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세액공제	○출연금액 × 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원천기술연구개발 × 20%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원천기술연구개발 × 30%
	위 해당·선택않은 경우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 × 40% ②당해연도 R&D비용 × (3%+α) → 6%한도	위 해당·선택않은 경우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 × 50% ② 당해연도 R&D비용 × 25%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공제를 단계적 인하 - 중소기업 졸업이후(유예기간 포함) 3년간 15%, 그 이후 2년간 10%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10%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 3% (중소기업은 7%) ○ 중소기업 타인설비 인터넷 이용(ASP) 금액의 7%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 × 20% * 일반기업은 산출세액의 30% 한도	
전자신고세액공제	신고건당 2만원 세무대리인: min[1인당 2만원, 연400만원(법인1천만원)]	

구 분	공 제 금 내 역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 × 10%
의약품 품질관리시설 투자세액공제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 투자금액 × 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액 = ①+② ① 투자금액 × 1% ② 투자금액 × 4% (수도권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는 5%)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상시고용증가인원에 대한 법소정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에 법소정의 사회보험료 상당액 *50%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학교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해 법 § 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준용하여 세액공제 ○ 학교에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 § 11조 연구인력 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준용하여 세액공제 *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를 지급하거 나 기부한 것으로 봄
근로자 복지증진 설비 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 × 7% - 무주택종업원(출자임원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또는 종업원용 기숙사로서 수도권 밖에 있는 미분양주택*과 직장보 육시설은 10% 적용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둘중 작은 것 1. 지급명세서 1건당 100원(최소공제액 1만원) 2. 연 400만원(세무법인, 회계법인은 1천만원)

구 분	공 제 금 내 역
간접외국납부세액특례	○ 외국자회사(지분율 20%*이상을 6월 이상 보유)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 법인세법 § 57 ①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규정 적용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신고, 환급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직전년도대비 초과분공제 방식 (해당 과세연도 지출 제3자물류비 - 직전 과세연도 지출 제3자물류비) × 3% * 적용요건 : 직전 및 해당연도 제3자 물류비용이 50% 이상이고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않을 것 법인세액의 10%한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해 해외자원개발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기업의 운동경기부 운영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취약종목의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해 창단후 3년간 10% 세액공제
석유제품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공급가액 *3%(법인세액의 10%한도)

[세액 감면규정]

구 분	면제·감면 소득의 범위	면제·감면의 방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 6)	1. 제조업, 부가통신업등을 영위하 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 역의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 육센터사업자로 지정된 내국 인 2. 창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제조 업 3.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과세연도가 지나 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법 소정의 에너지 신기술중소기 업	최초 4년간은 50%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 7)	-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	- 소기업 · 도매업 등 : 10% · 수도권내 도매업 등외 : 20% · 수도권외 도매업 등외 : 30% · 수도권내 지식기반 : 10% - 중기업 · 수도권외 도매업 등 : 5% · 수도권외 도매업 등외 : 15% *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부터 매출액 100억원 이상 법인은 소기업 제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 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 § 21)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지 급받는 국가·지자체·내국법 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등	- 법인세 면제 * 내국법인 국외사업장에서 2006.2.9.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적용 제외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 § 22)	-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하 여 지급받는 배당소득 (자원보유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는 경우에 한함) * 해외자원개발사업 : 농·축·수·임 산물, 광물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 업 및 동 자원의 가공사업	- 100% 면제 *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는 선택적용

구 분	면제·감면소득의 범위	면제·감면 방법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 33의2)	-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을 2012. 12. 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전환하는 경우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 전환도 해당됨	- 전환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이후 3년간 전환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조특법 § 63)	<1999. 8. 31. 이후 공장 이전시> -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의 공장시설(본점·주사무소 포함)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 * 2003. 1. 1. 이후 지방이전 분부터 수도권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	- 이전연도와 그 다음 6년간 → 법인세 100% 감면 - 그 다음 3년간 → 법인세 50% 감면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 63의2)	- 과밀억제권역안에서 3년(공장이전은 2002. 12. 31. 이전 지방이전분까지 5년, 본사이전은 2003. 12. 31. 이전 지방이전분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사를 둔 법인이 -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2011. 12. 31.(신축 이전은 2014. 12. 31.)까지 이전하여 사업개시 *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건설업은 제외	- 이전연도와 그 다음 6년(4년)간 → 법인세 100% 감면 - 그 다음 3년(2년)간 → 법인세 50%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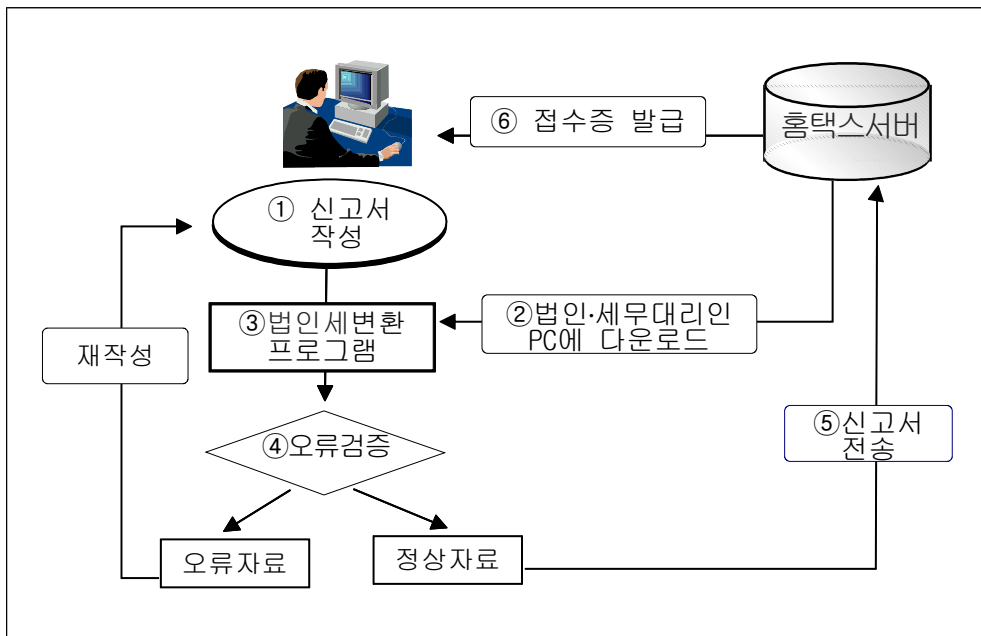
구 분	면제·감면소득의 범위	면제·감면 방법
농공단지 입주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 64)	-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나주·김제지평선·장흥해당·북평 산 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폐광진흥지구내 입주하는 개발 사업시행자로서 관광숙박업, 종합 휴양업,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 법인 포함)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 업연도와 그후 3년간 → 법인세 50% 감면
영농조합법인에 대 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 § 66)	- 영농조합법인	- 농업소득 전액 -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1,200만원 × 조합원수 × $\frac{\text{사업연도월수}}{12}$ 한도)
영어조합법인에 대 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 § 67)	- 영어조합법인	100% - 각 사업연도소득 중 (1,200만원 × 조합원수 × $\frac{\text{사업연도월수}}{12}$ 한도)
농업회사 법인에 대 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 § 68)	- 농업회사법인	- 농업소득 전액 -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 : 최초로 소득이 발생 한 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 세 50%감면
사회적기업 및 장애 인표준사업장에 대 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 85의6)	- 사회적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 득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 업연도와 그후 3년간 → 법인세의 50%감면

구 분	연제·감면소득의 범위	연제·감면 방법
산림개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 102)	-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당해 법인이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 법인세 : 50% 감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 104의24)	-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국내(수도권 밖)로 이전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하고 국외 사업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등 일정요건 충족 * 2011.1.1. 이후 최초로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법인부터 적용	-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다음 4개 과세연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 121의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 121의9)	㉠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해당 구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해당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한 감면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에 대한 감면 - ㉠의 1/2를 각각 감면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 33의2)	중소기업이 5년 이상 영위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전환하는 경우 포함)에서 제조업 등으로 사업전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 법인세 : 50%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조특법 § 121의17)	㉠ 기업도시개발구역(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기업도시개발사업(신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의 해당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신발전지역 육성에 위한 법률에 의한 것도 동일	㉠에 대한 감면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에 대한 감면 - ㉠의 1/2를 각각 감면

13 전자신고

전자신고

전자신고(정기분)
전자신고(중간예납)
법인세전자신고제출연장서류
주식등전산매체신고
일괄출력PDF문서보기



1. 전자신고방법

(1) 신고대상법인 및 전자신고자

- ① 신고대상법인 :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 ② 전자신고자 :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또는 외부조정 세무 대리인 및 단순 신고대리를 하는 세무대리인

(2)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신고서 변환·전송
- ② 신고기한 : 법인세 법정신고기한(2012. 12월말법인의 경우 2013. 4. 1.

단, 연결납세적용을 받는 법인은 2013. 4. 30)

- (3) 전자신고 대상 서식(별도 고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시)

160여종(단, 연결납세적용을 받는 법인은 서식 일부가 상이함. 2010.12월말 법인부터 적용되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신고서식이 증가된 경우에도 전자신고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 전자신고 가능)

(4) 제출 제외하는 서류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제외되는 서식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종료 후 5년간 당해 법인이 성실히 보관하여야 한다.

(5) 전자신고시의 혜택

조세특례제한법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당해 법인과 세무대리인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유형별 세액공제]

① 일반법인 : 납세자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 세액공제

② 세무회계법인 : 세무회계법인 본인의 법인세 신고월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동안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1회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회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에 납세자 1인당 4만원(세무회계법인은 연간 1,000만원 한도)을 적용하여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세무회계법인 연간 공제 한도 : 종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12.2.2. 이후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수동제출 서류의 제출기한 연장]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함)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 이상 법인 및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 이상인 법인

※ 2012.12월말 법인의 경우 2013.4.10.까지 제출

(6) 유의사항

국세청의 적합성 검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전자신고서는 수시로 작성자의 PC에서 오류검증이 가능하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신고마감 일전에 신고서를 전송하여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폭주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무대리인등록

기장을 하는 세무대리인의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홈텍스ID를 입력하여 전자신고를 하기 위한 절차이다.

세무대리인 등록	전자신고제작	데이터조회
1.세무대리인 상호	친절한 세무사	
2.세무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9	
3.세무대리인 관리번호	1 - 1234 - 1	
4.세무대리인 조정반번호	서울청 - 1234	
5.세무대리인 성명	친절한	
6.세무대리인 주민번호	670827-1234563	
7.세무대리인 사업장주소	150-038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83	
8.세무대리인 사업장관할 세무서	107 영등포	
9.세무대리인 전화번호	02) 3270 - 1234	
10.세무대리인 전자메일주소	kkimsgyu@nate.com	
11.홈택스 로그인 ID	kimsgyu	

4. 전자신고제작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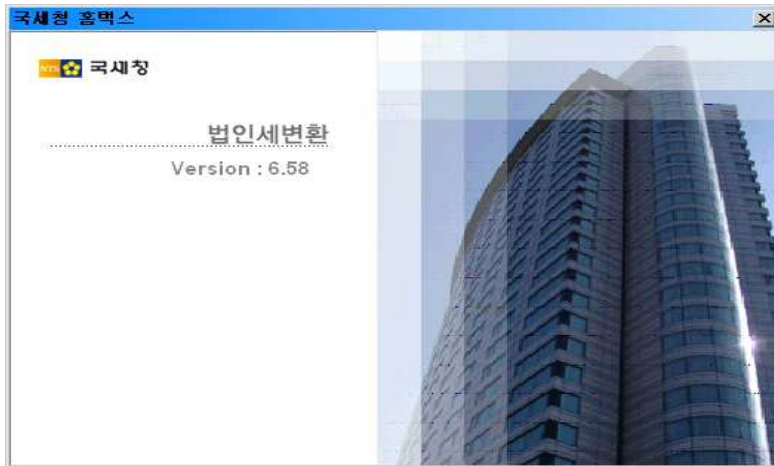
Esc	종료	F1	도움	F2	코드	F4	제작	F6	국세청변환프로그램	F7	암호화뷰어	F8	전자신고대상서식	F12	불러오기
세무대리인 등록 전자신고제작 데이터조회															
사업종료월 : 12 말 법인 신고인구분 : 1 (1.세무대리인신고, 2.납세자 자진신고)															
회사 코드 : 0001 (주)서민상사 ~ 9997 GHLTK 제작경로 : C:\ErsData															
☒	코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마감상태	서식번호	서식명								
☒	2008	(주)놀라워	412-81-54106	과세표준	강제마감	A100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A10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A111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						A112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_자산)								
☐						A113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_부채자본)								
☐						A115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								
☐						A134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A172	합계표준대차대조표								
☐						A243	가치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						A244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								
☐						A278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전체회사 53 / 마감된회사 1						작성 서식 수 : 11 건									

4. 데이터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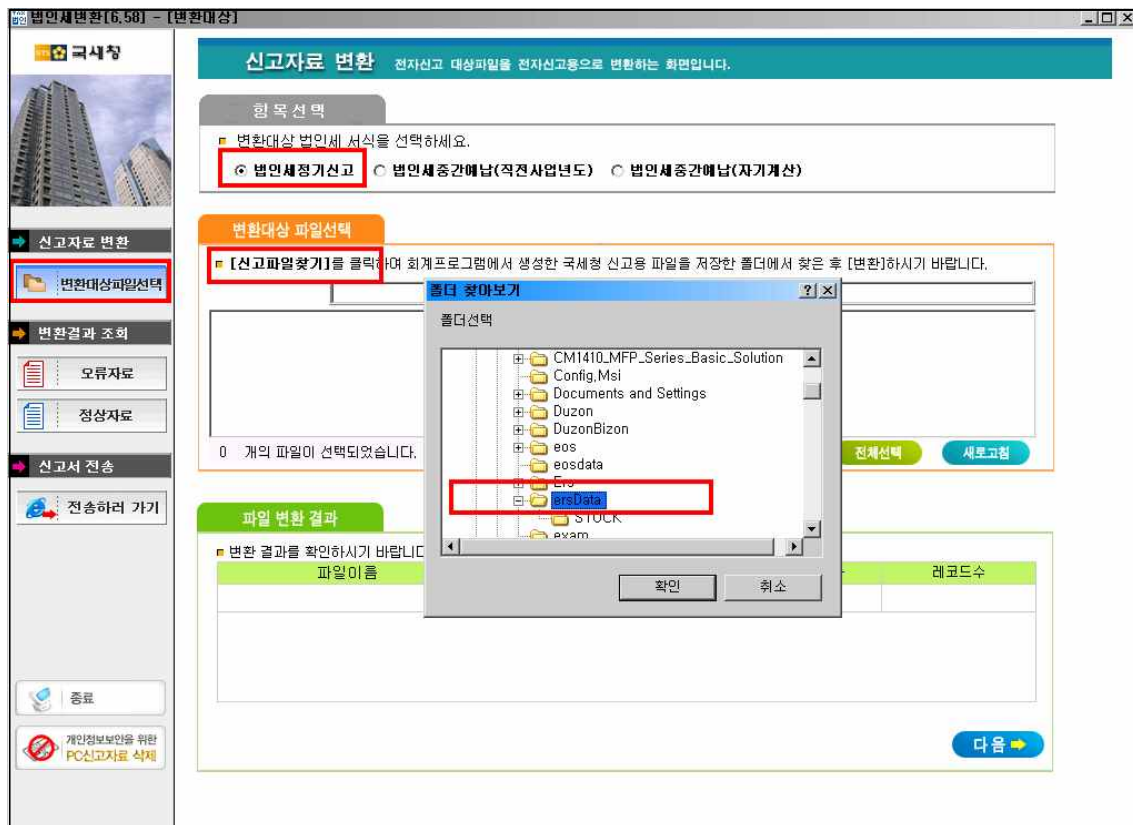
세무대리인 등록 전자신고제작 데이터조회															
조회할 신고파일 선택 C:\ErsData\20120228_A350															
NO	회사명	사업자번호	서식	서식명	번호	한글명	데이터								
0001	(주)놀라워-법인조정	412-81-54106	A350	법인세중간에납신고납부계산서	1	자료구분	[81]								
			A10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	서식코드	[A350]								
			A102	소득금액조정합계표	3	세목구분코드	[31]								
			A112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_자산)	4	과세기간_년월	[201112]								
			A113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_부채자본)	5	납세자ID	[4128154106]								
			A115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	6	신고구분	[3]								
			A117	제조원가명세서	7	신고차수	[0001]								
			A140	최저한세조정계산서	8	순차번호	[0001]								
					9	납세자구분	[8]								
					10	사용자ID	[kimsyu]								
					11	제출년월	[201108]								
					12	법인등록번호	[1236681392112]								
					13	법인명(상호)	[(주)놀라워-법인조정]								
					14	성명(대표자)	[김기범]								
					15	사업장소재지	[서울 동대문 전농 151]								
					16	E-mail 주소	[]								
					17	전화번호	[02-2141-1232]								
					18	업태명	[제조,도소매]								
					19	종목명	[전자부품]								
					20	주업종코드	[]								
					21	사업연도(시작일자)	[20110101]								
					22	사업연도(종료일자)	[20111231]								
					23	수시부과기간(시작일자)	[]								
					24	수시부과기간(종료일자)	[]								
					25	작성일자	[20110831]								

5. 데이터전송

(1) 처음실행시



(2) 전자신고데이터 파일 불러오기



- ① 파일저장 경로 - 기본값으로 C:\WersDATA 폴더에 생성한다.
- ② 파일명 부여 방법 - 예) 일반법인 20130325.A100.enc
비영리 법인의 경우) 20130325.A138.enc